일반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3-38-353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연구

-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2년도 정책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한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연구 -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년 6 월

연구주관부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연 구 책 임 자 :이경용 (책 임 연 구 원)

공동연구기관:서 울 보 건 대 학
연 구 책 임 자 :갈 원 모 (교 수)

내부공동연구자 : 이 관 형 (선 임 연 구 원)
오 지 영 (연 구 원)
서 남 규 (연 구 원)
외부공동연구자 : 추 수 경 (서 울 보 건 대 학)
신 문 진 (한국안전환경연구원)
성 규 식 (삼 성 전 자)
윤 여 송 (삼 성 전 기)
신 헌 수 (서 울 보 건 대 학)
양 홍 석 (한국안전환경연구원)
조 홍 태 (한국안전환경연구원)

<제목차례>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Ⅱ. 연구내용 및 방법 ·····3

1. 모기업-협력업체의 거래관계 및 법적 구조 ·····3

2. 국내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현황 및 성공사례 ·····3

3. 모기업-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인식 조사 ·····3

4. 외국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제도 현황 ·····4

Ⅲ. 연구결과 ·····5

1. 모기업-협력업체의 거래관계 및 법적 구조 ·····5

가. 전자부품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및 특수성 ·····5

나. 사내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구조 ·····9

2. 국내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현황 및 성공사례 ·····16

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배경 ·····16

나.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성공사례 ·····18

3. 모기업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인식 조사 ·····34

가. 모기업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현황 ·····34

나. 모기업-협력업체 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 ·····43

4. 외국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제도 현황 ·····50
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계약(도급)관계의 새로운 형태 ·····50
나. 영국의 도급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침 개발 ·····54
다. OSHA의 PSM 사업장 하청관리시스템 ·····56
라. HSE의 Good Neighbour Scheme ·····58
마. Responsible care 에서의 도급업체 안전·보건·환경 관리 ·····59
5. 모기업-협력회사 안전보건활동의 요약 ·····60
가. 모기업에서 지원 가능한 안전보건활동 ·····60
나. 모기업에서 지원 가능한 안전보건활동 ·····65
다.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안전보건활동 ·····66

Ⅳ. 결론 및 정책 대안 ·····69
1.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모델설계 ·····69
가.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 ·····69
나.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 ·····76
2. 결 론 ·····81

참 고 문 헌 ·····85

부록 1. O전기(주) 협력업체 관리 요령서 ·····87

부록 2. 타 업종의 모기업-협력업체 성공사례 ·····96

< 표 차 례 >

<표 1>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실태 ·····21
<표 2> 정기평가검사항목 ·····27
<표 3> 모기업의 안전보건조직 활동 ·····35
<표 4> 모기업의 협력사 사고조사 및 평가 ·····36
<표 5> 모기업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38
<표 6> 협력업체 대표자의 안전보건 인식 ·····40
<표 7>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현황 ·····41
<표 8>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 방안 ·····42
<표 9>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활성화 요소 ·····44
<표 10>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의 활성화 요소 ·····45
<표 11> 모기업의 안전보건 중 협력사와의 정보교류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46
<표 12> 협력사 대표자의 정보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47
<표 13>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개선책 ·····48
<표 14>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선책 ·····49

<그림차례>

[그림 1] 산업간 하청 구조 ·····9
[그림 2]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절차도 ·····20
[그림 3] 안전보건 진단 및 활동 업무 추진도 ·····26
[그림 4] 연간 재해율의 변화 추이 ·····31
[그림 5]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분장 ·····69
[그림 6]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 ·····71
[그림 7]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분장 ·····76
[그림 8]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 ·····78

요 약 문

1. 과 제 명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연구 -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2. 연구기간

2002년 7월 ~ 2003년 6월

3. 연 구 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이경용 책임연구원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전기전자업종으로 한정하고, 전기전자업종 중 모기업-협력업체의 종합 안전보건관리모델개발을 통해 산재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기업의 활동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업체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원활동,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의 조사를 통해 그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모델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외국의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소개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5. 연구내용

우리나라가 하도급 구조가 증가하게 된 배경과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하청구조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구조를 파악하여 차별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성공사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모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무진과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기업과 협력사 관계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 검토와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Need를 파악하였다. 모기업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성공사

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설계하고 그 업무의 흐름을 분석하여 모기업-협력업체 제안 모형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

6. 활용계획

본 연구는 협력업체의 단순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모기업의 종합적 관리모형과 일체화하여 보다 체계화·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모기업의 안전보건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업체의 네트웍 구축지원과 협력업체 관리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고동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모기업-협력업체 근로자 및 경영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협력사를 사내, 사외로 구분하여 그 관리모델을 2가지로 구분·제시토록 하였다. 모기업의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모델에서는 공동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사내협력업체 평가 및 등급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 및 Safety 마일리지 제도, 협력업체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약서 작성 및 이행확인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관리모델을 제안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모형과 업무 flow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외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모델에서는 업종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정보네트웍을 통한 정보교류, 업종별 안전보건 평가시트 개발 및 적용, 협력업체 등록시 안전보건 실행계획 검토(Audit)·승인, 안전보건 컨설팅 및 인증시스템 취득지원, 우수협력사 시상 및 감점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기업과 사내협력업체 공동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사내협력사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보다 모기업에 밀착된 안전보건지원체계를 갖춤으로서 사내협력사의 안전보건수준이 모기업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기업의 사외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보네트웍을 이용한 관리체계 구축과 업종별 공동협의회 운영을 통해 모기업 안전보건활동이 전달될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케 하고 협력업체 등록 시 안전보건 실행계획을 검토(Audit)/승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서 21세기 보다 효율적인 모기업-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규정의 신설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 활성화 측면의 각종 정책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배려가 요망된다.

궁극적으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도 자율안전관리를 모토로 삼아야 함으로 절대규제나 강제적 방식이 아닌 성공적 모델 제시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자율적 확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효과분석과 제반 시행을 위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본 연구모형이 성공기업뿐만 아니라 타 기업에서도 널리 정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모델은 국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과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전기전자업종뿐만 아니라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건설업 등으로 확산되어야 협력업체들의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한 모델개발 연구가 제조업의 각 위험업종, 건설업 등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기타 분야로 그 성공모델을 계속 발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속적인 연구분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기업의 자율적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 확산을 위한 향후연구가 년도별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7. 중심어

모기업, 협력업체, 성공사례, 안전보건모델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적 제조업이 지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 가운데 중요한 한가지는 도급체계의 고도화라고 말할 수가 있다. 공산품의 품질과 기능이 급속하게 개량되면서 부품의 생산과 기계의 설계 및 조립이 분업화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생산을 전담하는 기업과 부품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긴밀한 도급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산업에의 도급체계가 얼마만큼 건실하게 발달되어 있는가는 그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된다.

최근 생산활동 패턴이 협력업체의 작업분배가 대폭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설치, 검사, 수리, 제품조립, 포장, 운송, 부품생산 등 제반작업이 외부 협력업체에 위임됨에 따라 협력업체 작업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업체(대기업)의 발주시 작업상의 안전고려, 협력업체 측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행, 발주업체와 협력업체간의 산재예방활동에 있어서의 공조 체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주된 노력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여건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납품지연이 대기업의 생산차질로 연계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활동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절대규제나 강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율적 확산을 유도토록 각 기업별 그 장점과 효과를 검토하여 자율적 도입을 유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 모델개발은 안전보건대행기관 등에 위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협력관계에 있는 모기업이 직접 챙김으로써 산재사고를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모델이지만 국내 기업에 잘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관행상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전략적 모델에 관한 정책적이며 실질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가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본다면 사업장내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권한과 아울러 공동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리체계를 이용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와 성공적 모델 제시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전기전자업종으로 한정하고, 전기전자업종 중 모기업-협력업체의 종합 안전보건관리모델개발을 통해 산재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기업의 활동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업체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원활동,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의 조사를 통해 그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모델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외국의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소개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모기업-협력업체의 거래관계 및 법적 구조

전세계적으로 고용의 유연화가 증가되면서 하청계열화 현상 또한 증가되었다. 우리나라가 하도급 구조가 증가하게 된 배경과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하청구조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구조를 파악하여 차별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타난 사내하청에 대한 법적 구조를 확인한다.

2. 국내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현황 및 성공사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무진과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실제 모기업에서 행해져 온 안전보건관리업무·범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최종모델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기술하였다. 협력사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의 개선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써 많은 협력사를 가지고 있고 정부정책에 맞춰 나름의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었다.

3. 모기업-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인식 조사

모기업-협력사 관계자(모기업 안전보건팀, 협력사대표, 협력사 담당자)와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 검토와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Need를 파악토록 한다. 모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 사업장의 재해율 실태, 현재 협력사 지원수준, 모기

업-협력업체 관계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협력업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는 안전보건활동 실태 및 재해현황, 모기업-협력업체 관계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자에게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현황과 모기업-협력업체 관계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기업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성공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설계하고 그 업무의 흐름을 분석하여 모기업-협력업체 제안 모형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외국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제도 현황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은 전세계적으로 당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사 안전보건관리를 조사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외국의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 접근전략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지원을 전체적 틀 속에서 이해한 후 모기업, 정부 가 협력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모기업-협력업체의 거래관계 및 법적 구조

가. 전자부품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및 특수성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성장한 국내 대자본들은, 1970년대 말까지 중소기업의 인수와 창업을 통하여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일관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시책이 강도 높게 전개됨에 따라 대자본의 생산정책은 크게 변모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자본은 지분에 바탕을 둔 수직적 계열화를 지양하고, 하청계열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독자노선을 버리고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1970년대 말까지 20%에 머물렀던 중소기업의 하청률은 1991년에는 무려 75.7%까지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하청의 증가는 재벌의 지분에 의한 계열화를 막는 정책이 주효했다는 점도 들 수 있지만 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또한 크게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징은 1980년대 이후 시장이 급변하면서 수직적 통합의 비효율성이 부각됨에 따라 나타난 하청의 이점을 노리려는 대자본의 욕구로 꼽을 수 있다. 이는 기업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를 불평등적인 구조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음을 단적으로 타나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경기에 연동한 하청률의 변화에 의해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소폭의 등락을 거듭, 20%에 머물고 이던 중소기업의 하청률은

1960년대 이후 보기 드물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던 1981～1984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불황기였던 1985～1986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1988년 올림픽과 3저 호황을 거치면서 경제가 크게 활황을 보였던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에는 급상승, 1991년에는 피크를 이루었다. 결국 이처럼 하청률이 경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을 하는 중요 이유는 이러한 기업간 관계를 '경기변동의 완충판'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입증하는 셈이다.

세 번째로 우리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는 양적으로는 확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중층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청관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서 고도화 되기도 하지만 대자본의 자원에 대한 조정 및 배분원리에 따라서 중층화된다. 즉, 대자본은 관리의 효율화와 자원의 적소배분을 위해, 전체생산영역 중 상당부문을 하청에 의존하되 직접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2차, 3차, 4차 등 중층적인 하청구조를 유지한다. 대체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차 하청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하청구조가 중층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간 하청관계는 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거래와 조직내 거래와의 중간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거래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언제라도 퇴출 할 수 있는 거래이다. 이는 시장거래와 내부조직거래의 장점을 흡수한 구조로서, 그 결과, 수직적 통합에서의 통제력과 시장거래에서의 분업이점인 탄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는 기업그룹 혹은 기업집단의 기본적인 조직이 되고 있으며, 일본 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상황에서 기업 간 하청관계에 의해 형성된 협력적 기업관계는 거래결정에 있어서 계열내 중핵기업의 권한에 의한 영향력이 작용하며, 개별 기업 간 장기적 의무관계, 상호간의 상호 신뢰관계 등에 의해 기업 간 고정적·계속적 성격의 거래관계

가 이루어진다. 일본과 미국의 산업조직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연결시킨 순수조직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순수시장형태의 이른바 양극체제이지만, 일본의 산업조직은 제조업의 중핵에 대규모 조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후방에는 소규모 조직의 부품메이커가, 전방에는 영세소매점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기업이 존재하고 그들이 계열의 관계를 맺고서 협력적 하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산업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갖는 원천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하도급을 의미하는 “subcontracting"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나 이는 정부나 비방자치단체의 발주에 관한 수주를 가르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 간의 거래의 경우 하도급 기업과 발주기업간의 관계는 자유, 독립, 창조를 기본적 성격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기업전략과 JIT생산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분업시스템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구조, 장기 지속적 계열관계, 가격과 품질, 납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그 특징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하우스형 또는 네트워크형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전자부품업체의 부품조달은 자체생산(내제)과 외부 부품업체로부터의 납품(외주)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외주는 다시 국내외주와 수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체들의 부품조달방식은 일본방식과 흡사하게 외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조립업체는 중요부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거의 외주로 돌리고 있다. 즉 개발의 초창기에는 주요부품은 모기업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부품은 국내외주에 의존하며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국산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수입부품을 국내외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외주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모기업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부품업체로 라인을 이관하게 됨에 따라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더욱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자전기 조립업체들의 수입부품비율이 높고 또한 외

주 거래 부품 중 주요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모기업이 거의 내부조직과 비슷한 정도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기업 동일그룹내의 계열사나 혹은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전기업체들의 수직적 통합정도는 구미기업들과는 달리 그 정도가 아주 낮아 일본방식에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체계는 일본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대기업은 외주에 의한 의존도가 낮고(수입품은 제외) 내제화율이 높다. ② 이러한 결과 부품 및 생산제품의 가공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비중이 낮다. ③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④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다. ⑤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다. 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나 R&D지출이 낮다. ⑦ 중소기업과 모기업간의 정보 교환률이 낮고, 교환되는 정보량도 적다. ⑧ 대여도 방식이 중심이며 주로 어음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된다(이윤보, 1998).

대부분 모기업의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 설비지원, 교육지원 등이다. 그 중 자금지원은 신제품개발자금 지원, 원자재 社給 및 구매자금 지원, 공장증축자금 지원, 시설개체자금 지원, 수급기업체 협의회 운영지원 등이 있고, 설비지원은 라인 이관에 따른 모기업 설비의 유·무상 지원이나 검사장비의 지원이나 신차종 개발에 따른 금형, 치공구 등의 지원 등이 있으며 교육지원은 계층별 전문기술 교육, 통신교육, 세미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기업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청 협력업체는 2차, 3차 하청 등 하청 중층화라는 문제가 있으며, 미경험, 미숙련 근로자가 많고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 능력,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욕 등의 결여로 모기업에 안전관리 의존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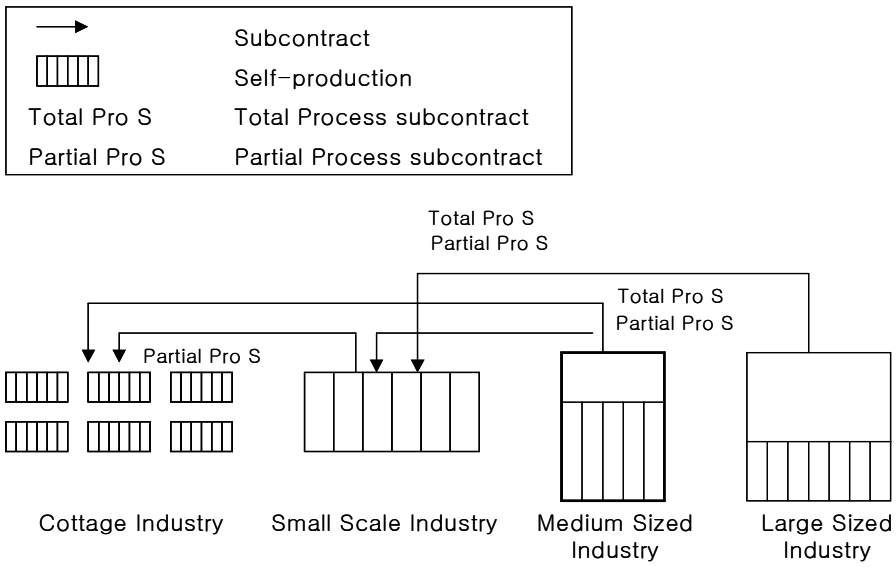

<그림 1> 산업간 하청 구조

국민 경제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은 중소 기업 혹은 소생산자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혹은 소생산자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다(최재욱, 1993).

이러한 하청구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인한 생산활동의 외부화가 더욱 증가되고 있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아니나 경제학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산업간 분업관계와 하청 계열 관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 보완적이고 건전한 하청관계를 이루기 위한 연구들로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도급 관계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

나. 사내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구조

일반적으로 사내하청이란, 고용계약체결의 형식과 임금지급 등 주된 고

용관계는 하청사업주와 노동자사이에 체결되어 양자사이의 전체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지만, 원청기업내(社內)에서 작업을 행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원청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노무공급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흔히 사내하청의 법형식으로 지목되는 민법상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하청사업주)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원청사업주)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664조)" 계약이다.

하도급은 일종의 「노동의 외부화」 현상이고 파견근로는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 는 **「노동의 비정규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외부화의 일환으로 하청기업에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변노동자 집단에 대하여 고용안정의 책임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작업장소나 지휘·감독 체계에 있어서는 내부 중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사업주에게 종속되게 하면서 언제든지 하도급계약을 매개로 그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인력공급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청은 '노무제공'을 약정의 대상으로 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하청사업주가 지는 것으로 되어 노무도급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업체와의 사이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다시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파견근로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내하청노동은 모두 법적으로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은 오로지 하청업자와 맺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임금체불, 산재보상을 비롯한 4대보험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즉 대체로 하청사업체는 규모가 작고 원청사업체는 대기업이므로 전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래 책임을 져야할 후자는 부당하게 엄격한 조건을 전자에게 강요하여 멋대로 하청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 결과가 예

상되는 것이다.

사내하청계약을 민법상 도급이라고 볼 때, 하청사업주는 그의 책임하에 요구되는 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원청사업주가 하청사업주에게 그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맺게 되는 것이므로 하청사업주는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생산수단의 보유·자금운용 등의 측면에서 그가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게 되고, 주문업체인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특별법들이 도급업체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사실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근거 위에 둔 정책적인 규정이지 도급의 법 형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도급인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작업의 경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2)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3)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도급인(원청사업주)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히 작업할 때 생기는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산안법 제18조).

이 조항은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산안법 시행령 23조)에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노동자가 총 50인이상이 되면 원청회사의 관리책임자가 하청회사 노동자의 안전보건업무까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래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13조 내지 17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개 대규모 사업장(최소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을 위주로 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하청 사업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에 의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고 이에 따라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지정은 하청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설치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책임자가 하청사업장의 안전한 노동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내하청의 경우 수개의 하청사업체가 원청사업장 내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더욱 긴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나)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선박건조업 등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산안법 제30조).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는 도급이 관행화되어 있어 공사추진과정에서 무리한 진행이 상시화되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안전상의 피해가 막심하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는 일반적인 일로 받아여질 정도인데 무리한 조합의 강행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급구조 속에서 계약시 반드시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간에 강제하여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쓰게 만드는 것이 표준안전관리비이다.

이는 주로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구입비용,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비용, 안전보건관리 및 개선비용,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 불안전한 작업형태·공정 등의 개선비용 등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된다. 이를 어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72조 1항).

다)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산안법 제28조).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아 유해작업도 노동자의 손일에 의존하는 데다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95년의 경우 직업병의 42.41%가 3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세사업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도 극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안전보건 투자에 소요되는 이윤소모를 줄이고 작업에 따르는 재해의 책임을 피하고, 직접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청에 의한 생산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유해작업등이 도급에 의하여 영세기업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해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67조 1호).

라)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원하청사업주간의 협의체구성·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안법 제29조).

이 규정은 그 적용의 범위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서 사내하청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하청사업주간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1호), 작업장을 순회·점검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2호),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3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시행규칙 29조)을 협의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은 건설업·조선업의 경우에는 월 1회, 나머지 제조업의 경우는 분기별 1회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원청사업주·하청사업주·원청과 하청의 노동자 각 1인이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다(시행규칙 30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70조 1호).

협의체는 원청업체사업주와 하청업체사업주만으로 구성될 뿐 원청노동자나 하청노동자가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산업안전의 1차적 위험자이며, 직접적 당사자인 원하청노동자를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과정에서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있는 일련의 경향에 반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협의체에 사내하청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동자측 위원으로 선정하여 사내하청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경우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전체 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청업체에 의해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사내하청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할 재정적, 시간적 여력이 없는 저을 고려하여 원청업체에게 그 책임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지도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정한 규정들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대개 벌금형에 불과한 제재를 받을 뿐이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이 그러하듯 행정관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사업주

에게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주로 영세업체인 하청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의무들을 불이행하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사업주의 부작위가 위법행위가 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민법 750조).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면, 산재보험에서 원청사업주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며,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 개의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는 수차도급이 행해지는 건설업종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사내하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내하청이 수차도급이 아닌 일차의 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는 원청업체이고, 하청업체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데 대한 위험을 원청사업주도 분담해야 하며, 원청업체의 설비나 장비에 의한 재해도 원칙적으로 원청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므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원청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원청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면 원청업체사업주가 산재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는 근로계약의 명의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3565 판결)도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것이 후술하는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국내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현황 및 성공사례

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배경

(1) 정부의 협력사 지원 추진 단계

가) 제1단계 (94～95) 도입단계

① 94년2월[노사정간담회] 및 [노동부장관정책방향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재해예방활동 전개 유도

② 매일경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공동으로 각종행사, 캠페인 전개

나) 제2단계 (96～00) 확산단계

①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

② 96.8월 확정한[산업안전선진화3개년 계획]중 [대기업협력회사 공동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토록 함

다) 제3단계 (01～현재) 정착단계

① Outsourcing으로 인한 사내협력회사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② 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준수를 통한 단순 반복적 재래형 사고 근절

③ Clean-3D사업을 통한 50인 미만의 사업장 보호

(2) 기업내부의 기업경영 환경 변화

최근 기업들은 정책적으로는 법적 요건과 규제의 강화, 제품과 공정의 안전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 증가 등의 기업경영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감시와 이해관계자들의

안전환경압력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안전보건환경관리는 기업경영의 최우선과제로 떠올랐고, 품질, 생산, 사내질서, 노사화합, 종업원 사기와 건전한 사풍확립의 기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처하는 것이 곧 인간존중의 기본이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자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출고하는 완제품에 부속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환경 관리는 모기업과 협력사의 상생관계 유지를 위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무한정한 지원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자립·자율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관리를 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협력업체 지원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대부분 협력업체 관리를 구매(외주관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평가시에도 안전보건항목은 미반영되어 있어 협력사 선정에 있어 협력사의 안전보건의 체계 부분은 등한시 되어 왔다.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은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협력사 안전관리를 하게 된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모기업의 유해위험작업을 하도급 형태로 넘기면서 3D 업종, 협력사에 유해·위험작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해 재해 및 직업병 유발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영세성은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불가능하게 하며 능동적인 안전보건관리에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하도급·OEM 등 생산활동의 외부 의존도가 높고, 경영의 영세성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기업들은 KOSHA 2000 Program 또는 OHSAS 18001 과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관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하게 된 배경을 만들게 되었다.

나.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성공사례

(1) 안전관리체제 확립

가) S전자 현황

S전자의 경우 협력회사 녹생 경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주거래 사업주 매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97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각 협력회사에 회의내용을 전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레스, 사출금형 업종에 한하여 분기별 1회 업종별 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도급, 분사, 파견회사 및 공사업체 와 모기업이 대표자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팀장이 주관이 되어 안전보건 신기술 및 동종 유사재해 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안전 그룹장이 주관으로 분기별 2회의 관리감독자 협의회를 운영하며 작업장의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협력사의 대표자와 관리감독자를 모기업이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수립하여 분사, 도급, 파견,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기업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전파 운영케 하고 있다.

나) O전기 현황

협력업체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전자네트웍을 구축하여 안전보건체제를 확립하였다.

① 경영주 HOT-LINE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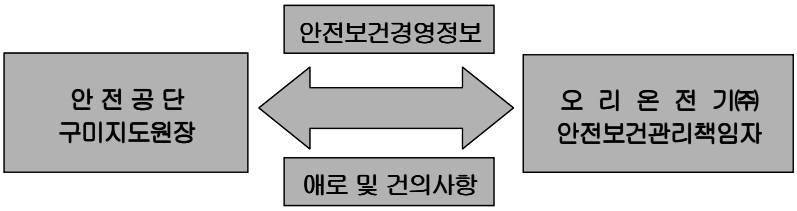

② 안전보건관리자 전자네트웍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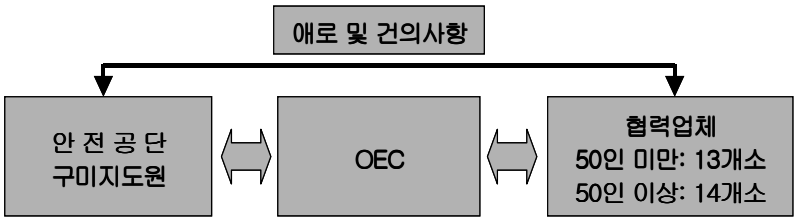

O전자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

O전자는 안전보건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협력업체 안전협의회 구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당사의 안전관리 지원배경 및 운영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며, 협력업체별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현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토의 한다. 또한 협의회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당상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세부적 지원방안을 설명한 후 기타 안전보건관련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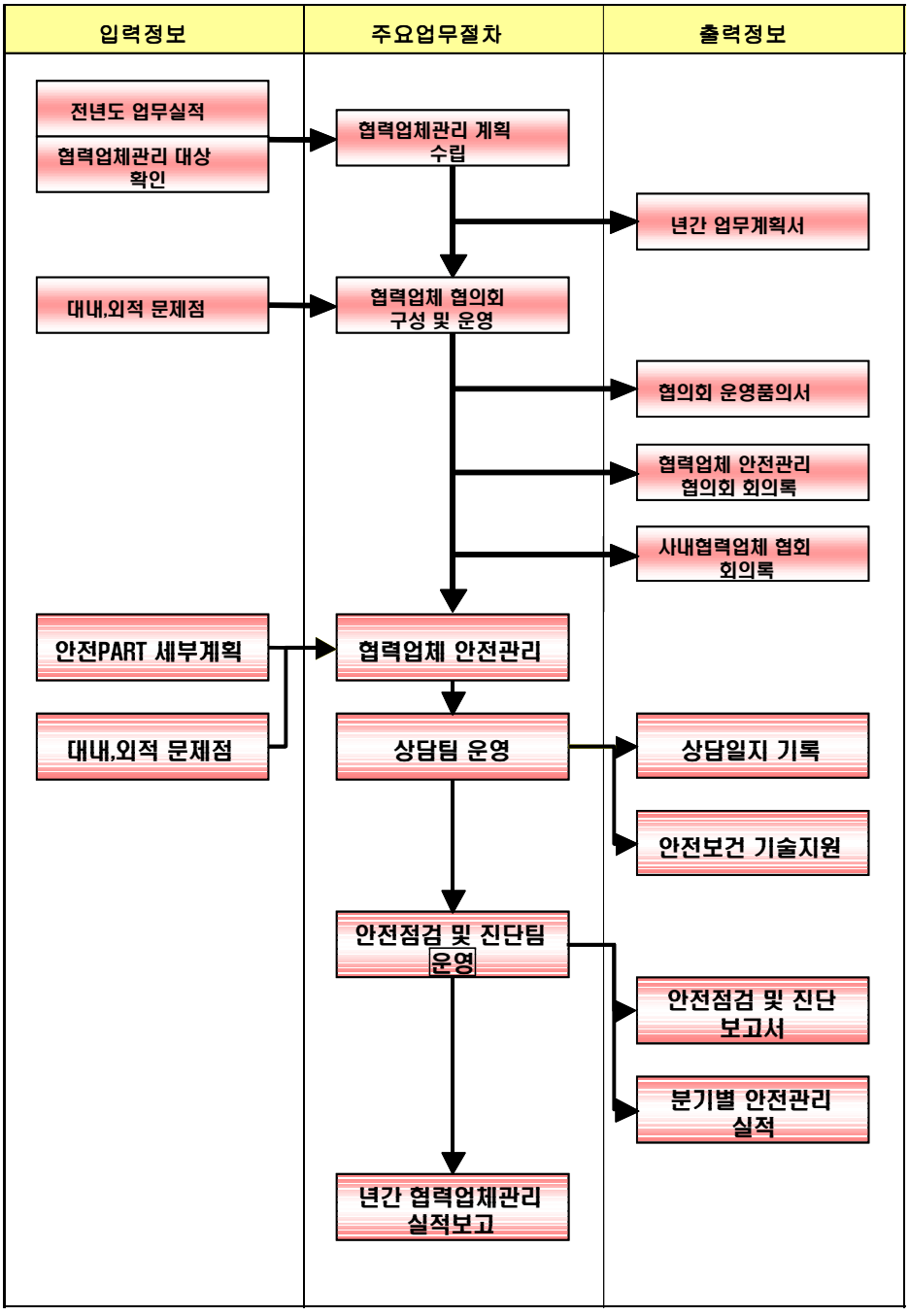

[그림 2]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절차도

다) 광주 S전자

광주 S전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실태

구 분	주 기	회의안건 및 효과	참석인원
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 협의회	1회/분기	●안전보건 동향 및 이슈사항 ●현안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의 및 협의 ●기타 환경안전 관련사항 교육	전라권·광주 협력업체
상주협력사 안전보건 협의회	1회/월	●안전보건 문제점 건의/협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계획대비 실적발표 ●안전다짐서 발표	사내 10개 업체 대표
구매 협의회	1회/월	●동일 자재별 정보공유/생산협의 ●설비 가동률 및 애로사항 건의	제품별 협력업체/구매담당자
품질 협의회	1회/월	●품질개선 방안협의(6 Sigma 지원) ●공정 및 설비 문제점 개선	부서별 협력업체/경영혁신, CS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사내협력사와 사외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사항이 다른 만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주기와 안건, 참석인원을 달리하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협력업체의 자율 환경안전관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KOSHA 200 프로그램의 인증을 적극 지원·권유하고 있다. 자율안전관리관리 체제 정착을 위한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 추진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경영자 및 관리자 검토사항

② 안전보건 경영체제 분야 지도
③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절차
④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규격서 제정 지도지원
⑤ 위험성 평가 및 내부감사 실시
⑥ 사후관리 등

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환경관리 협약 체결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율 환경관리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및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례,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험실을 통한 수질 분석 등에 있어 지원을 하고 있었다.

(2) 교육 및 훈련 지도

가) S전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영하는 안전환경체험관에서 협력사 전 사원을 대상으로 2-4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은 당사 출입 공사 협력회사 전 사원으로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부 업체 지도요원인 제조부서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요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협력회사 전 사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실무집, 협력회사 안전수칙등을 담은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200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배포되는 안전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5S, TPM, Safety & Quaility, TPM 등에 근거하여 191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깨끗한 작업환경 만들기 운동을 전

개하고 있다.

안전보호구 착용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시 교육, 평가시 반영 등으로 착용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S전자의 경우 98년 80%에 그치던 안전보호구 착용율이 02년에는 95%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MSDS 제도는 전 협력회사에 자료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환경 진단 전문요원 - 모기업의 실무자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 이 직접 방문하여 지원 토록하는 환경 설비 진단제도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S전자는 협력회사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이념 및 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내교육 전문협력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규모 및 교육인원은 다음과 같다.

규모			
연건평	건축면적	교육인원	교육시설
940평	180평	- 수용인원:250명/일 - 합숙인원:150명/일	-대/중 강의실 : 5개소 - 전산실습실 등 : 23개소

교육 내용은 핵심인력교육으로 공장장, 핵심간부, 현장감독자들을 대상으로 핵심인력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으며, 전문교육과정은 현장개선, TPM, 생산성 향상, 안전관리실무, 품질관리, ISO 9001, ISO 14001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강의 하고 있다. 통신 SDP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노동부와 연계하여 교육비용은 고용보험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O전기 현황

O전기 또한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협력사 근로자 들에게는 연 2회 이상의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 보건, 소방 분야 실무 책임자를 구성하여 상담반을 상시 운영하며 협력사들의 관련 상담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다.

다) 광주 S전자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부서장, 실무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의 협력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사내 교육시와 사외강사 교육시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내 교육시에는 안전보건교육, 조직력 강화 교육 등이며, 사외강사 교육시에는 납품차량 운전자 교육, 건조기 및 동절기 방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자료는 주로 인트라넷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 주 1회 또는 협력업체의 요청시에 제공하게 된다. 시청각자료(비디오 테이프 95개)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작업자 정기 안전교육 자료, 특수 및 위험공정 작업자 교육 자료, 사고사례,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등이다.

(3) 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지도활동

가) S전자

S전자의 총 600여개에 이르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진단 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있는 매년 총 7억원의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총 28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진단 및 사루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진단 및 진단결과 발표회를 실시하며 협성회 각 업종 대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진단 CHECK LIST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Level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안전관리 모델사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전자는 총 223개사에 대하여 설비교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

원금액은 3년 무이자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491억원에 달한다. 지원내용은 노후 설비교체가 70%, 국산화설비지원이 30%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장치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진단 평가시 안전장치 가동율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장치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환경안전관련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팀 주관으로 분기별 1회를 실시하게 되는 정기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는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S전자에서는 모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전사 환경안전위원장 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외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역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대행업체와 공동으로 기술 지도·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대해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진단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모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위험성 제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지원 및 개선방안 공동수립으로 협력사와 공동으로 Green Factory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나) O전기

O전기는 협력사에 대해 안전보건기술 및 기법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험기계 기구 및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안전기술을 지도하고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시킨다.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각종 기술자료 및 홍보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반을 통한 지원 요청시,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후 필요시, 안전주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매월 4일을 협력업체 공동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점검, 진단 및 평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확인 및 승인을 절차를 꼼꼼히 거치고 있다. 재해율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 관리로써 재해감소 목표 승인을 통해 재

해율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생산기술을 지원하였는데 배기대 UN LOADING 자동화 공사시에 BULB 폭죽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으로 인적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어 자동화 공사를 추진하였다. 생산기술 지원시에 반제품이 고온의 로체를 통과 후 상온에서 폭죽발생 및 수독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의 호소가 발생하여 고온의 로체를 통과한 반제품을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지 않고 ROBOT로 자동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광주 S전자

연간 및 월 계획에 의거 실시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주요 협력업체 27개사 및 2차 벤더 13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진단 및 지도 활동을 펴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장 이전 및 라인 변경시 또는 협력업체 요청시에도 하고 있으며, 기타 협력업체는 인트라넷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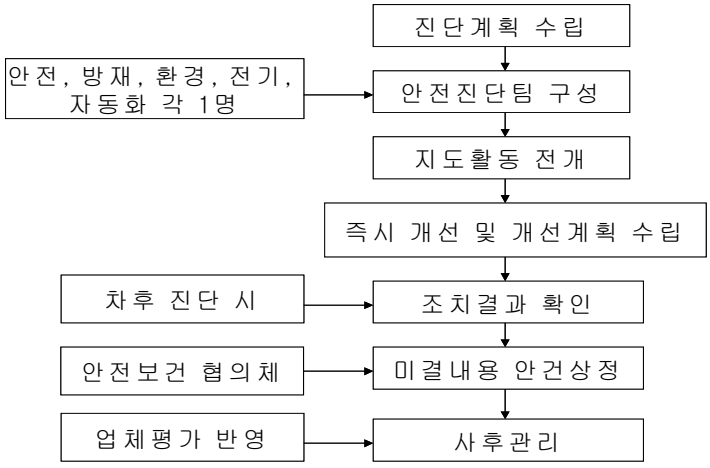

<그림 3 > 안전보건 진단 및 활동 업무 추진도

진단내용은 환경안전 시설 법적 인허가 여부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환경, 안전, 보건, 방재, 전기 분야별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지도를 하며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및 기법을 지도하고 최근 주요동향 이슈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1대 기본수칙, 또는 Clean 3D 같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진단 활동을 하였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협력업체 점검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업체 담당자와 직접 개선 조치하였으며, 협력업체 차후 점검 시 문제점 조치결과를 확인하였다. 시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사별 조치일정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며, 미결 내용은 안전보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4) 기타

가) S전자

① 환경안전정기평가 제도 운영

540여 개사를 대상으로 평가 비중 10%를 반영하는 범위내에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정기평가의 대상 협력사는 년 1회 실시하게 되는 평가에서 부진사업장으로 평가되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부진사업장은 협성회에서 탈락 조치되며 부진사업장 자체 시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항목은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게 되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기평가검사항목

항 목	점수	항 목	점수
○무재해 달성	7	○안전교육훈련	10
○안전장치 가동률	8	○안전활동	14
○위험기계 정기 검사율	6	○설비안전관리	22
○안전개선실시율	6	○작업환경관리	16
○안전보호구 착용률	5	○환경관리	14
○경영자 안전의식	6	○방화관리	20
○안전관리조직체계	10	○재발방지대책	6

위와 같은 항목을 통해 평가되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차등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등급목표제를 적용하여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등급별 관리 등급은

- A등급 : 우수회사(90점 이상) →시상대상, 대외홍보
- B등급 : 양호회사(75점 이상) → 질적향상 관리
- C등급 : 보통회사(60점 이상) → 사업부통보(경고대상)
- D,E급 : 부진회사(59점 이하) → 자체 사후관리 대상(경고대상)

이 된다.

② 무재해 운동

무재해 달성 사업장을 대상으로 Incentive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191개사가 이러한 Incentive를 적용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TV, VCR 등을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재해 달성 협력사에 기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조치하고 있는데 직접 방문하여 대책서 징구 및 전파교육을 실시하며, 재해사례를 <안전회보>에 등재하여 전 협력회사에 전송하여 참고자료가 되게 한다. 그리고 동종 업체에 비해 2배의 재해율을 기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업체보다 높은 재해율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계획서 제출을 통해 재해율 감소 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나) O전기

① 협력업체 관리요령서 작성

주요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주관팀은 안전에 대한 기획 통제 관리활동을 담당하고, 계약팀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을 담당하여 협력업체관리 주관팀은 회사와 협력업체간

의 평가, 지도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각각의 주요 부서에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주관팀
  ◎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 상담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기술 및 기법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협력업체 안전관리 점검, 지도, 조언 등

- 협력업체관리 주관팀
  :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창구업무 수행

- 계약팀
  : 협력업체 선정시 상해, 질병 및 사고기록을 포함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프로그램,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협력업체 선정 의무

- 계약의뢰팀
  ◎ 협력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해 도급공정과 관련한 화재, 폭발, 독성물질의 누출 등 잠재위험성 정보제공
  ◎ 안전수칙 및 안전작업요령 교육 및 교재제공
  ◎ 비상탈출구의 확인,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등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설명
  ◎ 안전관리 기록 유지사항 확인, 점검 및 평가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보

이 때 협력업체는 당해 근로자들의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수칙 교

육이수 확인, 작업장가 작업공정과 관련한 잠재위험성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 유지, 작업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성은 즉시 계약팀 및 안전주관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과 회사의 안전관리 지도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우수업체 시범운영 계획

과거 3년 간 재해발생이 없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일체감이 조성된 협력업체를 우수업체 대상사업장으로 한다. 협력업체 관리요령서의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평가 및 안전보건 지도 결과와 노동부 및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CLEAN 사업장 인정여부에 따라 선정하여 선정된 시범사업장을 운영하여 타 협력업체에 사례전파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적이다. 우수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다) 광주 S전자

① 모기업 안전관리 사례 전파

안전관리 활동을 협력업체에 전파하고 현장 특성에 맞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지원한다.

당사의 TPM 추진 부서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TPM활동을 지원하고 적응하여 담당 AREA 및 설비에 대해 자주보전을 정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소음, 분진, 오일 미스트에 대해 중점 개선 지도하여 쾌적한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위험기계기구별로 관리책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위험 기계기구별 관리책임자를 정/부로 지정하여 사용방법 점검, 안전장치들의 책임관리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실명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소방시설 관리 및 이상유무 확인방법 등을 실습교육하고, 소방시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월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능을 100%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책임관리를 하게 된다.

(5) 협력회사 지원 추진 효과

가) S전자

지속적인 협력회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면서 S전자는 산재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 대비 2000년에는 재해율이 1/5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안전보건활동 협력업체 지원 효과를 확실히 보장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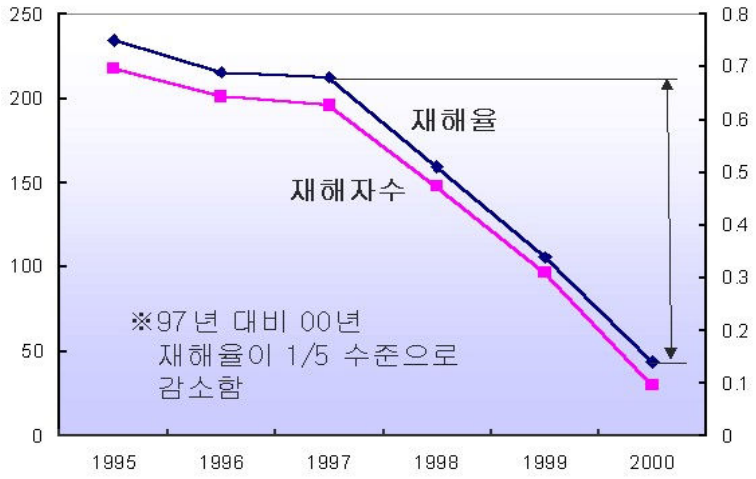

[그림 4] 연간 재해율의 변화 추이

또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 정착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정기적인 (상, 하반기)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을 통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능력 Level up 시켰고, 교육교재 및

홍보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의식 수준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Green Factory운동으로 Clean공장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Clean공장 실현으로 생산성 증가 및 제품의 품질 향상되었고, 안전보건관리를 생산성 및 품질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모기업에 대한 신뢰도 고취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사내·외 협력회사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시 필수 코스로 체험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기업 안전환경체험관 개방을 통한 교육 효과 배가시켰다.

그밖에 S전자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제안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동시 참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협의회 개최 시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전문가 참여하여 업종별/분야별 안전보건기술자료 제공 및 자문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향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공장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하는 것이다. 소규모사업장인 경우 대부분 임대공장으로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 보관소 등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시설개선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투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입법화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관리비용 모기업 부담(3년간 유효 기간제 운영)하게 하여 법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업체는 연간 안전보건대행비 전액 지급하고, 전문안전보건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체계적 관리 가능토록 한다. 전문기관의 점검결과를 기초로 정기협의회 운영 및 협력회사 안전보건수준평가하고 협력회사의 체계적 관리수준 도달 시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년 2회 정도의 모기업 주관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하고 사내 다기능

전문요원 육성하여 대기업 부속의원을 협력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교육활동 강화 전문활동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O전기

모기업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기업, 협력업체 대외 이미지 향상되었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일체감 및 신뢰감 형성되었다. 또한 협력업체 안전성 향상으로 자재 수급 원활 및 품질향상, 원자재 품질향상으로 원가절감 등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 광주 S전자

기본적으로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을 펴면서 재해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밖의 무형의 효과로는 협력업체 지도지원 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하고, 피동적인 점검에서 능동적인 점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하게 되었다. 협력업체 임직원이 설비, 작업환경 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로 협력업체 임직원 불만해소 및 일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 협력업체의 우수 추진내용을 협력업체 안전보건 협의회시 전파하고, 추진사례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전파하고자 하며 협력업체 중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TF팀을 상주시켜 지도활동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협력업체 안전관리 부서에서 2차 벤더 업체까지로 확대하여 지원체제 강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3. 모기업-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인식 조사

가.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현황

전기전자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0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은 3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째는 모기업의 안전보건 전문 스탭, 둘째는 협력사 최고경영자, 셋째는 협력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을 통하여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와 연계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계층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설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 모기업 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인식

먼저 협력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기업 안전보건 전문스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모기업에서 평균 5년 정도 안전보건에 종사한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업종은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한 전기전자 업종(전자부품)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모기업이 협력사 안전보건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설문에서는 전체의 87.5%가 사내 협력사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한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사내·사외 구분 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고 응답한 것도 12.5%에 달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사내협력사 중심의 협력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외협력사는 상대적으로 지원활동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사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은 어떤 형태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있어 部나 팀 단위의 조직적 활동을 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科단위 조직으로만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1%나 되었다.

<표 3> 모기업의 안전보건조직 활동 unit : (%)

	구 분	비 율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추진 방법	사내협력사 중심	87.5
	사외협력사 중심	0.0
	사내, 사외구별없이 지원	12.5
	지원 없음	0.0
안전보건활동 조직형태	전담부서로 部, team	89.0
	다른 부서 소속 科	11.0
	기타	0.0
경영자의 관심 및 지원실태	관심 높고 적극적 지원	62.5
	관심 높으나 소극적 지원	25.0
	관심 보통 부서 활동 활발	12.5
	관심 낮고 활동 저조	0.0
연계정도	일원화 통합관리	0.0
	핵심사항 전달 주기적 교류형식	37.5
	일부분 전달 후 주기적 보고	50.0
	자체 별도 관리	12.5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의 연계는 모기업 경영자의 관심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응답하고 있는 경영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응답자의 87.5%가 경영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2.5%로 조사 대상 모기업의 경영진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심과 실천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의 연계는 주로 모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수직적 기업연결망 관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리 중심축이 모기업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력사의 안전보건 문제를 모기업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응답자의 50%가 협력사의 산재자료를 보고 받아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자료를 보고 받지만 원인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2.5%였다.

<표 4> 모기업의 협력사 사고조사 및 평가

	구 분	비 율
협력사 사고원인 조사	자료 보고, 철저 분석	50.0
	자고 보고, 원인 분석 없음	12.5
	자료 보고 없음	37.5
협력사 안전보건지원활동 평가여부	매년 정기적인 평가	62.5
	지원시 수시 평가	25.0
	간헐적 평가	12.5
	평가 없음	0.0
산재 원인	근무자의 불안전행동	57.1
	안전장치나 시설 미흡	28.6
	건강 및 보건관리 미흡	14.3
	안전보건교육 소홀 및 관리감독 소홀	0.0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불량	0.0
협력사 안전보건활동 평가지표	재해율	50.0
	안전보건인증제도	22.2
	무재해 시간	0.0
	재해건수	27.8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시로 개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들이 응답한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의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62.5%가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원활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평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5.0%였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혹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7.5%나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 모기업이 실시하는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안전관리(교육, 시설)
② 방재관리(소방, 훈련)
③ 환경관리(폐기물)
④ 화학물질관리(위험물)
⑤ 안전장치, 안전시설, 안전조직 등
⑥ 법적 관리 상태 등
⑦ 안전보건조직
⑧ 재해율
⑨ 산재보험
⑩ 화재보험 가입 여부

모기업 수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관리일 것이다. 응답자의 57.1%는 산업재해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불안전행동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8.6%는 안전장치나 시설측면의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도 14.3%였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된 내용을 보면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1.1%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와 교육내용의 교류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3.3%였다.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의 평가지표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전체의 50%가 재해율을 들고 있어 정량적 평가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이 재해건수로 전체의 27.8%가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었고 안전보건 인증제도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에 달해 새롭게 인증제도를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표 5> 모기업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 분	비 율
협력사 안전보건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교육 및 훈련지원	12.5
	자체 검사 등의 점검활동	12.5
	종합안전보건 컨설팅	37.5
	협력사 CEO의 안전보건 마인드 형성	12.5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25.0
제도 도입	Safety 마일리지 제도	37.5
	우수협력사 표창제도	25.0
	우수협력사 납품 우선권 제공	12.5
	우수협력사 납품단가 적정이윤 보장	0.0
	불량 협력사 입찰제한 및 퇴출제도	25.0

협력사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종합안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도 25%나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었고 기타 교육훈련지원, 자체검사 등의 점검활동지원, CEO의 안전보건 마인드 형성도 모두 12.5%의 동일비율로 시급히 요망되는 개선책으로 지적되었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은 협력사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안전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7.5%였으며, 우수협력사 표창제도와 불량 협력사의 입찰제한 및 퇴출제도를 응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25.0%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협력사의 납품과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제한 조치나 표창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모기업과 협력사의 종합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

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된 항목을 보면 모기업 재해율에 협력사의 재해율을 포함하거나 협력사 재해 발생시 충분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 적극적인 상담과 시설지원, 그리고 전담조직을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규의 강화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지원 등을 들고 있었다.

(2) 협력사 대표의 안전보건인식 조사

협력사의 대표는 모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모기업과의 하청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업연결망의 주요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모기업이 지원해주길 바라는 지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안전보건 정보연결망으로 전체의 25.5%가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으로 전체의 23.6%가 응답하였으며, 모기업의 안전보건 상담 및 위험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각각 16.4%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자체검사 등 사업을 직접 지원해 주길 원하는 응답도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근로자 측면에서의 안전보건 개선요망 분야는 각종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교육으로 전체의 47.3%가 응답하였으며, 주의집중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다.

협력사 대표들이 원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 사항을 보면 기술지도의 필요성에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4.5%, 무재해 달성 사업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응답한 경우도 34.5%였으며, 합리적 규제 강화를 응답한 경우도 16.4%였다. 협력사 대표들이 응답한 협력사의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위험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장치의 시설보완 등이었다.

<표 6> 협력업체 대표자의 안전보건 인식 unit : (%)

	구 분	빈 도
공공부문의 지원요구 사항	무재해 달성 사업장의 각종 혜택 부여	34.5
	사업장 안전보건개선 기술지도	34.5
	규제의 합리적 강화	16.4
	시설자금 융자 등의 설비개선책 지원	14.5
근로자 측면의 개선 요망 분야	각종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47.3
	주의 집중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32.7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 대책	16.4
	안전수칙 등의 법과 규정이 개선	3.6
모기업의 지원요망 분야 (1순위)	모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네트웍	25.45
	안전보건교육지원	23.64
	모기업의 안전보건 컨설팅	16.36
	위험설비에 관한 자금지원	16.36
	기 타	18.19
우선적 지원 필요 항목	안전보건교육	25.45
	위험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	23.64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	20.0
	안전장치 시설보완	16.36
	기타	14.55

협력사 최고경영자의 기타 안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는 많은 부분이 교육과 정보 공유와 관련되어 있었다.

협력사 대표자는 모기업에서 근로자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교육과 동시에 안전사고 사례 등의 시청각 교육자료 또한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모기업에서 진행

하고 있는 안전관리대행에 따른 정보 지원등은 그 효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합리적인 안전 감독의 필요성 강조와 위험설비 및 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모기업 사원과 동등하게, 모기업의 작업장 환경과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3)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 현황

협력사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보면 우선 모기업의 핵심사항이 협력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주기적으로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42.9%였다.

<표 7>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현황 unit : (%)

	안전보건 활동	빈 도
안전·보건 업무 추진현황	전담 자체관리	32.1
	안전 전담, 보건 대행	8.9
	보건 전담, 안전 대행	10.7
	안전·보건 대행	42.9
	미추진	5.4
연계정도	일원화 통합관리	21.4
	핵심사항 전달 주기적 교류형식	42.9
	일부분 전달 후 주기적 보고	12.5
	자체 별도 관리	23.2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담당자의 다른 업무 과중	33.3
	까다로운 산업안전보건법규 이해 및 준수	36.8
	대표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관심 저하	7.0
	경비부담	22.8
모기업 산재 사고 보고 현황	산재사고 발생시마다 제출	41.8
	분기별 또는 연단위로 제출	20.0
	간헐적으로 제출	23.6
	전혀 없음	14.5

본 조사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협력사의 경우 모기업과의 안전보건 연

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사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할 때 장애가 되는 사항은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로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약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모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 사항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이 가장 많은 30.4%를 차지하였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36.4%를 차지하였다. 협력사의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산재자료를 모기업에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1.8%였으며, 간헐적으로 제출한다는 응답이 23.6%였다. 이 점으로 보아 조사 대상 협력사와 연계된 모기업이 협력사의 산재 관련 정보를 상당부분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 방안

	안전보건 활동	빈 도
모기업에 바라는 지원 항목	안전교육	30.36
	안전점검	19.46
	안전장치의 설계 및 설치	14.29
	기타	35.89
지원시 활성화 가능 분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시설 및 인프라구축	36.36
	근로자 건강진단	27.27
	작업환경 측정	16.36
	직업병 예방활동	14.55
	기타	5.45

협력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정부(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교육과 법·제도의 정비,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선 협력사 대표자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정부(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의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실시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추진능력 개발을 위해 해당 분야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분기 1회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형식적 관리 이미지를 탈피한 주기적인 업체 담당자교육과 자체교육을 위한 홍보자료(관계법령, 팜플렛)의 배부 등 안전에 대한 정기간행물 무료 배포 및 포스터 제작 배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리고 현실적인 수준의 고려하여 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비의 측면에세 제시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의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예를 들어 정부노임의 안전관리비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모기업과 협력사 간의 업무교류, 정보 공유등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부나 공단에서 확인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기업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타 의견으로는 협력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및 경영상태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지도 및 의식이 부족하므로 모기업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산정·지급하고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및 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전관리비 별도산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업규제 완화 차원의 선임의무대상 기업이 축소됨에 따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이므로 모기업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전담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나. 모기업-협력업체 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

(1) 안전보건관리활동 활성화 요소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는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전략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협력사가 자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요소는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점검이나 검사 혹은 측정 등의 사업을 모기업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50.0% 응답),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38.9%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협력사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요소로 협력사에 대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안전보건활동 지원(47.37%)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으며, 협력사 대표자도 또한 가장 많은 응답율(66.67%)을 보였다. 이러한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요소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각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뚜렷한 차이($p<0.01$)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표 9>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활성화 요소 (단위 : 명)

구 분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요소				계	χ^2-value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협력사 활동지원	안전보건 스텝의 고용	안전보건관리 대행 제도		
협력사 관리자	9(15.79)	27(47.37)	7(12.28)	14(24.28)	57(100.0)	26.04*
협력사 대표자	12(22.22)	36(66.67)	1 (1.85)	5 (9.26)	54(100.0)	
모기업 관리자	0(0.00)	4(50.00)	3(39.90)	1 (11.1)	8(100.0)	

* $P<0.01$

안전보건 관리활동의 활성화 요소가 협력사 대표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무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여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협력사 대표는 53.7%, 10년 이상이 46.3%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안전보건 관리활동 활성화요소에 대한 응답비율도 두 그룹 모두 점검, 검사, 측정 등의 협력사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을 5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았으나 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의 활성화 요소 (단위: 명,%)

구분		안전보건 관리활동 활성화 요소				Total	P-value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협력사 활동지원	안전보건 스텝 고용	안전보건관리 대행 제도		
근무기간	10년 미만	4 (13.79)	20 (68.97)	1 (3.45)	4 (13.79)	29 (100.0)	0.230
	10년 이상	8 (32.00)	16 (64.00)	0 (0.00)	1 (4.00)	25 (100.0)	
연령	50대 미만	4 (16.00)	18 (72.00)	0 (0.00)	3 (12.00)	25 (100.0)	0.522
	50대 이상	8 (27.59)	18 (62.07)	1 (3.45)	2 (6.90)	29 (100.0)	
업종	제조업	7 (35.00)	12 (60.00)	0 (0.00)	1 (5.00)	20 (100.0)	0.289
	비제조업	5 (14.71)	24 (70.59)	1 (2.94)	4 (11.76)	34 (100.0)	
규모	50인 미만	7 (33.33)	12 (57.14)	1 (4.76)	1 (4.76)	21 (100.0)	0.234
	300인 미만	4 (20.00)	15 (75.00)	0 (0.00)	1 (5.00)	20 (100.0)	
	300인 이상	1 (7.69)	9 (69.23)	0 (0.00)	3 (23.08)	13 (100.0)	

업종은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제조업이 전체의 37.0%, 비제조업이 63%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비제조업은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도입 또는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제조업의 협력사 대표의 응답율(5.0%)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 대행이 비제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업주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장 근로자의 규모를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세 그룹 모두 협력사에 대한 모기업의 활동지원과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안전보건 관리활동의 활성화 요소로 꼽고 있었다. 그러나 그룹간 응답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정보교류 측면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교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모기업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설비 등의 위험 정보관리 분야(37.5%)와 안전수칙 등의 근로자 작업안전 분야(37.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자는 안전수칙 등 근로자의 작업안전분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6.1%였다. 또한 협력사 대표자는 위험설비등의 위험정보관리분야를 가장 많이 응답(32.73)하였으나 대부분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1> 모기업의 안전보건 중 협력사와의 정보교류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단위 : 명, %)

구 분	정보교류 내용					Total	χ^2-value
	산재처리 분야	위험 정보 관리 분야	산업보건 분야	근로자 작업 안전 분야	교육 및 컨설팅 분야		
협력사 관리자	7 (12.28)	9 (15.79)	3 (5.26)	32 (56.14)	6 (10.53)	57 (100.0)	19.98*
협력사 대표자	16 (29.09)	18 (32.73)	1 (1.82)	12 (21.82)	8 (14.55)	55 (100.0)	
모기업 관리자	1 (12.50)	3 (37.50)	1 (12.50)	3 (37.50)	0 (0.00)	8 (100.0)	

* $p<0.01$

안전보건관련 정보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도 각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p<0.01$)이 나타났다.

<표 12> 협력사 대표자의 정보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단위: 명,%)

구분		응답 척도비율					total	P-value
		산재처리 분야	위험정보 관리 분야	산업보건 분야	근로자 작업안전 분야	교육 및 컨설팅 분야		
기간	10년 미만	10 (34.48)	6 (20.69)	1 (3.45)	7 (24.14)	5 (17.24)	29 (100.0)	0.321
	10년 이상	6 (23.08)	12 (46.15)	0 (0.00)	5 (19.23)	3 (11.54)	26 (100.0)	
연령	50대 미만	8 (30.77)	8 (30.77)	0 (0.00)	4 (15.38)	6 (23.08)	26 (100.0)	0.354
	50대 이상	8 (27.59)	10 (34.48)	1 (3.45)	8 (27.59)	2 (6.90)	29 (100.0)	
업종	제조업	4 (19.05)	10 (47.62)	0 (0.00)	3 (14.29)	4 (19.05)	21 (100.0)	0.244
	비제조업	12 (35.29)	8 (23.53)	1 (2.94)	9 (26.47)	4 (11.76)	34 (100.0)	
규모	50인 미만	6 (28.57)	5 (23.81)	0 (0.00)	5 (23.81)	5 (23.81)	21 (100.0)	0.799
	300인 미만	6 (28.57)	8 (38.10)	1 (4.76)	4 (19.05)	2 (9.52)	21 (100.0)	
	300인 이상	4 (30.77)	5 (38.46)	0 (0.00)	3 (23.08)	1 (7.69)	13 (100.0)	

협력사 대표자가 정보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하여 협력사 대표자의 근무기간, 연령, 업종,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기간, 연령, 업종, 규모에 따라 응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협력사 대표자는 산재처리분야(34.48%) 정보교류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10년 이상의 협력사 대표자는 위험정보 관리분야(46.12%) 정보교류를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꼽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50대 미만의 협력사 대표자들이 대부분 각 분야별로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업

종별로는 제조업은 위험정보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47.62%)를, 비제조업에서는 산재처리분야에 대한 정보교류(35.29%)를 정보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응답하였다. 50인 미만, 5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 산재처리분야, 위험정보관리분야, 그놀자 작업안전 분야에 치중하여 응답하고 있었다.

(3)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 개선책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자와 협력사 대표는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절실히 요망하는 개선책은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로 각각 52.6%, 50.9%를 차지하였다. 반면 모기업 관리자는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를 가장 많이 응답(65.5%)하였다.

이 또한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선책에 대한 응답도 각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이고 있었다.

<표 13>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개선책 (단위 : 명,%)

구 분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 개선제도				Total	χ^2-value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	PQ심사·유사한 협력사 선정시 안전보건 활동 평가 비중강화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신설	노사정책 및 제도 신설		
협력사 관리자	5 (8.77)	6 (10.53)	30 (52.63)	16 (28.07)	57 (100.0)	17.08*
협력사 대표자	14 (25.45)	5 (9.09)	28 (50.91)	8 (14.55)	55 (100.0)	
모기업 관리자	5 (62.50)	0 (0.00)	3 (37.50)	0 (0.00)	8 (100.0)	

* $p<0.01$

협력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

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응답자의 근무기간, 연령, 업종,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여 응답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근무기간을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두 그룹간의 응답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 그룹 모두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신설을 각각 51.72%, 50.0%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선책

(단위 :%)

구분		응답 척도비율				total	P-value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	PQ심사·유사한 협력사 선정시 안전보건 활동 평가 비중강화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신설	노사정책 및 제도 신설		
기간	10년 미만	5 (17.24)	2 (6.90)	15 (51.72)	7 (24.14)	29 (100.0)	0.120
	10년 이상	9 (34.62)	3 (11.54)	13 (50.00)	1 (3.85)	26 (100.0)	
연령	50대 미만	3 (11.54)	2 (7.69)	18 (69.23)	3 (11.54)	26 (100.0)	0.060
	50대 이상	11 (37.93)	3 (10.34)	10 (34.48)	5 (17.24)	29 (100.0)	
업종	제조업	9 (42.86)	2 (9.52)	9 (42.86)	1 (4.76)	21 (100.0)	0.081
	비제조업	5 (14.71)	3 (8.82)	19 (55.88)	7 (20.59)	34 (100.0)	
규모	50인 미만	5 (23.81)	2 (9.52)	11 (52.38)	3 (14.29)	21 (100.0)	0.604
	300인 미만	8 (38.10)	2 (9.52)	8 (38.10)	3 (14.29)	21 (100.0)	
	300인 이상	1 (7.69)	1 (7.69)	9 (69.23)	2 (15.38)	13 (100.0)	

또한 연령별로 50대를 기준으로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90% 내에서 응답의 차이는 그룹간에 나타나고 있었다. 50대 미만의 협력사 대표자들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신설을 69.23%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안전보건의 전문인력 추가 확보를 37.93%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제조업 협력사 대표자들은

전문인력의 추가확보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을 모두 42.86%로 동일하게 개선책으로 꼽은 반면 비제조업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신설을 55.88%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결과를 보였다. 규모별로 보게 되더라도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4. 외국의 모기업-협력업체 지원제도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계약(도급)관계의 새로운 형태

(1) 유연성과 분산의 증가 추세

계약의 형태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생산품과 조직형태의 변화이다.

- 생 산 품 : 더욱 지식 집약적이고 서비스 중심적으로 생산품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조직형태 : 운영상 유연성은 필수적이 되었음. 예를 들어 최대 수요량은 하청 조직의 형태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

현대 조직은 더욱 분산되고 'lean production methods[1)]'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핵심적인 기능만을 사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기능은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하청과 협력사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되었으며 여러 조직들이 같이 일하게 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으며, 안정감은 떨어지게 되었다.

업무 계약과 직업 등급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회사들은 단기간 계약,

1) To get the right things to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e first time, while minimizing waste and being open to change

임시직 근로자, 프리랜서 또는 자유업자(자영업)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복합적인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계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비정형화 되고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 대부분이 이런 추세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기술은 인력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택 근무가 가능해진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trends

□ 자영업자(self-employment) 증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조금씩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open-ended 계약이나 영구계약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정(단기간)계약, 임시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들은 아직까지 영구계약이나 open-ended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EU에서 비정규직(non-permanent job)의 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1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시용역계약(temporary employment agency)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 전체의 2%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 파트타임 근로의 지속적 증가. 2000년 EU 모든 근로자의 1/4이상이 주당 25시간 미만의 일을 했으며 모든 근로여성의 40%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2) 산업안전보건과의 관계

조직적인 변화를 통해 OSH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효과와 이것들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조직 계약 방법에서 언급되었으며 서비스들은 수많은 OSH 사업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 OSH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내 활용도 감소
■ 임시직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는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적다.
■ 영구적 또는 open-ended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높

은 직업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비영구적인 근로자들은 이런 조절자체가 적다. 이런 것이 작업관련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 협력사(하청)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스케쥴이 더 빡빡하게 짜여 이어 이에 따른 압박이 뒤따르게 된다.

작업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임시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하청이나 계약기간이 짧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1. 더 높은 사고율은 임시계약 업무에 대해서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사례보고들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지식이나 보호력이 떨어지는 하청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옮겨진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열악한 인간공학적 상태와 비영구적인 계약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산업별, 직업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2. 실제 자료나 사례보고들에서 고용시의 계약 상태(근로시간, 직업안정도, 질 등)에 기초한 노동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비영구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직업안정도가 떨어지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통제를 덜 받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며 숙력도가 떨어지는 일을 수행하고 훈련받는 과정 또한 적다. 이런 문제들이 작업관련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 있다. 특히 훈련과 숙련도의 발전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를 점하고 있다. 자격을 생애에 걸쳐 배우고 얻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의 직업만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업무의 위험도를 변화시키고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비영구적, 파트타임업무에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작업조직의 변화 – 가능한 OSH 관계

□ 업무조직이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의 빠른 진전은 자신의 삶이나 직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 불확실성은 '영구' 와 ' 임시' 근로자의 사이의 범위내에서 존재한다. 시간의 압박의 증가와 업무의 증가는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다.

계약관계의 변화 – 가능한 OSH 관계
□ 비정규 근로자와 하청회사로 위험 전달
□ 임시용역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사고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험과 훈련 미숙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단기간 계약한 근로자들은 open-ended 계약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인간공학적 상태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연령, 직업,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 임시직 또는 단기간 고정 계약 근로자들은 훈련과정(OSH 훈련 포함)이 적다. 또한 그들의 근로시간 조절력도 떨어지며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는 작업관련 스트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OSH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가 많으나 그들은 더 적은 훈련과정과 비숙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
□ 계약관계나 건강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OSH 예방 활동

OSH 권한과 조직내에서 OSH 예방을 위한 현재 모든 활동들을 기술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포함하여 측정 가능한;

■ 복잡한 계약 상태하에서의 관리는 OSH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OSH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소통과정과 공동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 사내의 OSH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식에 대하여 보상한다.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과 Self-employed 근로자들은 대규모 사업체에 하청으로 존재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 대규모 조직들은 OSH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 계약관리절차에 까다로운 OSH 문제를 포함시킨다.
■ 계약상의 관계에 있어서 OSH 문제를 일반화 시키고 대기업은 계약 당사자와 자원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그들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영국의 도급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침 개발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은 고객사와 도급자가 작업활동 중에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안전법에 의거한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간하였다.

(1) 구체적인 법적 의무

고객사는 도급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급자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고객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고객사가 능력 평가시 참고기준
▶ 고객사가 원하는 작업과 유사한 업무형태에 대해서 경험은 얼마나 있는가

▶ 도급자의 안전정책 및 관행은 무엇인가
▶ 최근의 안전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발생한 사고 건수)
▶ 갖추고 있는 자격과 기술은 무엇인가
▶ 2차 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에 따르는가

이와 더불어 고객사는 도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정책 선언과 절차, 허가절차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2차 도급자의 선정은 도급자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도급자는 고객사가 도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2차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는 2차 도급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 규명

그 다음에는 도급자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수주 받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보건을 위해하는 요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도급자와 고객사 (고객사는 자사의 사옥 안에서 행해지는 작업활동에 따르는 위험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위해 요소를 감소 혹은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합의하여야 한다. 제안된 작업에 2차 도급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해당단계의 위험평가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비롯하여 작업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 때 협력과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사는 자사와 도급자, 2차 도급자가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브리핑이나 회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객사와 도급자, 2차 도급자는 안전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근로

자의 상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은 노조가 인정되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대표를 통하여, 혹은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선출한 안전 관련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도급자에 대한 관리

고객사는 도급자가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객사와 도급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고객사와 도급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몇가지 문제

- ■ 사용하여야 하는 장비는 무엇이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비는 무엇인가
- ■ 어떤 종류의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고, 누가 제공할 것인가
- ■ 어떤 작업절차를 따를 것인가
- ■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 ■ 사고는 어떻게 보고하고 기록할 것인가.

이와 더불어 고객사와 도급자는, 예를 들면 안전평가가 현 실정에 걸맞은지, 통제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때까지 고객사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다. OSHA의 PSM 사업장 하청관리시스템

PSM 사업장에 대하여 OSHA에서 권고하는 모기업과 협력사의 고용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나 이중 몇가지 안을 일반 제조업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관리 모델로

인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Employer Responsibilities

가) 고용주는 계약자를 선택할 때 계약하고자하는 사업주의 안전성과 및 추이 등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나) 고용주는 계약자의 업무와 공정상의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 또는 독성 위험을 알고 있는 계약자와 해야 한다.

다) 고용주는 계약 대표자는 필요한 비상시 행동계획에 대한 적절한 조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대표자는 계약사 근로자들이 이러한 적절한 절차를 알고 있는지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라) 고용주는 커버되는 공정지역안의 계약 근로자의 출입이나 보호를 통제하기 위해 이 섹션에 맞춰 안전한 업무지침을 실시하고 개발할 수있다.

마) 고용주는 작업이행의무에 대하여 계약자들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고용주는 공정상의 계약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을 관리해야 한다.

(2) Contract Employer Responsibilities

가) 협력사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지침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나) 협력사 고용주는 각 근로자들이 그들의 업무와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또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독성, 적절한 비상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다) 협력사 고용주는 각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함을 문서화해야 한다.

라) 협력사 고용주는 안전작업지침을 포함하여 작업시설에 대한 안전

한 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HSE의 Good Neighbour Scheme

대다수 기업들은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이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기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게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하청업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은 기업의 성공경영에 점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 이미지와 지위가 협력업체의 보건·안전 및 환경 능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사고 발생시 일반 국민들은 모기업의 근로자인지 협력업체의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또한 모기업 또는 협력업체라는 구분도 하지 않고 있다.

모기업-협력업체 관계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모기업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수준에 맞추도록 요구)한다면 협력업체나 모기업 모두에게 위험한 일일 것이다. 모기업의 안전보건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다수의 협력업체들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퇴출 되면 모기업은 협력업체를 과도하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1997년 HSC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ood Neighbour Scheme을 도입하였다. 이 계획은 모기업의 안전보건전문가를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업체(특히 소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높은 안전보건 수준을 달성토록 하는 활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은 다양하나 전형적으로 세미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원 및 조언, 내부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많은 모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러한 Scheme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은 장래의 납품업체를 확보한다하거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경영지원을 하고 있다. HSE는 Good Neighbour Scheme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체들이 소기업들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Good Neighbour Forum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마. Responsible care 에서의 도급업체 안전·보건·환경 관리

화학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경영방침에 안전·보건·환경대책을 공약하는 등 화학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Responsible care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Responsible care의 공정안전 등 6개 분야 107개 실행지침 중에서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지침을 소개한다.

공장내에서 작업하는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코드의 각 실행관리항목의 내용에 잘 부합하는 안전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핵심활동으로는 첫째, 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정책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사 시방서에는 도급업체나 입찰자가 갖추어야 할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조건들을 간결한 용어로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현장작업에 이써서 회사의 안전·보건지침을 확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도급업체로부터 받아두어야 한다. 넷째, 도급업체와 그 고용인들에게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들을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상태를 감시하여 평가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조치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활동으로써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입찰시방서의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며, 회사의 안전회의에 필요하면 도급업체의 근로자도 참여시킨다.

5. 모기업-협력회사 안전보건활동의 요약

가. 모기업에서 지원 가능한 안전보건활동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 성공사례, 지원현황 조사, 외국의 지원현황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들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모기업은 협력업체간의 종합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활동을 제어하고 지원해야 한다.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활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등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관해 모기업과 협력업체 사업주간의 협의체(상주업체 안전보건협의회 포함)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은 협력업체의 재해율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의 개별적인 단위에서 종합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 수행업무
  - ① 협력업체의 재해율 파악,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토의
  - ② 작업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행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를 체제구축
  - ③ 협력업체 재해발생 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응급구조체제 구축
  - ④ 화재발생, 위험경보 통일, 비상 연락체제 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위험패트롤 팀」 설치·운영

- 설치대상은 모기업·협력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
  ① 기 준 : 모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
  ② 규 모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 구성
  ①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협력업체는 현장 작업 책임자 포함) 노사 동 수로 개별 기업별 3인 이상으로 구성
  ② 개별기업의 안전보건 관계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반드시 참여

- 패트롤 팀의 운영회수 및 운영시기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② 기타 작업내용 변경 및 공정신설 또는 변경 시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수시 실시

- 패트롤 내용
  ① 공정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②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부착 여부
  ③ 근로자의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④ 기타 공장 건축물 및 구조물, 설비 등의 구조적 이상유무 점검 등

- 권한 및 역할
  ① 모기업·협력업체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실태 점검
  ② 사망·부상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③ 시설물의 안전, 작업기계·기구의 안전, 작업공정의 안전,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통제 등 감시

④ 패트롤 요원별 적발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팀 회의에 상정하여 자체 시정·개선토록 유도

⑤ 급박한 위험상황 발견 시 「작업중지」 권한 부여

⑥「위험패트롤 팀」은 근로감독관의 각종 점검 시 반드시 참여

나) 모기업에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담 지원부서의 설치

- 전담지원부서(권장) : 연간 매출액의 40% 이상을 의존하는 협력업체를 30개사 이상(내주 협력업체 포함) 보유한 모기업

- 기타사항

① 모기업의 협력업체 관리부서와 안전보건관리 부서간에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함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안전관리부서에서 담당

② 안전보건기술상담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 법적 관련조항 매뉴얼 발간

※ 상담일지 및 자료 비치

(2)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가) 협력업체 재해감소 목표 부여 및 재해율 관리

- 연초에 모기업에서 협력업체별 당해 연도 재해감소목표를 설정 시달 및 관리

①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하로 목표를 부여

- 매월·분기·반기 등 정기적으로 재해감소실적을 분석하여 우수사업장은 시상, 불량사업장은 집중관리 지도

나) 협력업체 최고 경영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협력업체 최고 경영자 회의 등 각종 모임 시 기업윤리측면에서 안전보건경영 마인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실무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체계적 교육실시

  ※ 모기업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아 협력업체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별도의 기업부담 없이 교육실시 가능

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모기업·협력업체 공동 안전보건활동 점검 실시

- 현장 패트롤 팀이 설치된 사업장은 동 팀의 주관 하에 실시(미설치 사업장은 모기업, 협력업체 노사합동으로 실시)

- 점검실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보고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자체 시정

(3) 우수협력업체 육성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가) 발주의 적정화 및 안전보건관리 지원

- 발주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한 납기, 최소경비를 포함한 적정단가가 되도록 배려하고 발주시 보호구, 안전장치의 사용기준, 위험물의 사용제한, 안전기준의 준수 등을 명시

- 대여기계가 있을 경우 방호장치 설치, 법정검사 수행 등 안전성확보 후 대여

- 발주 이후에도 협력업체 대하여

①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진단의 지원, 계열사업장에 대해서는 모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계설비의 안정성 평가와 개선, 작업공정, 작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지도

② 특히 내주업체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등을 동시에 실시

나) 안전보건분야 등급심사제 운영

- 협력업체 선정 또는 발주 전에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우수(Green)·보통(Yellow)·불량(Red) 등 3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 및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등급심사 결과 불량판정 사업장, 재해다발 및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각종 지원중단, 납품 제제 조치 등 실시

  ※ 이미 계약을 한 협력업체도 등급심사를 하여 재계약시 반영

- 안전보건 분야의 세부 심사용 Checklist 및 설명서를 심사 전에 심사대상 협력업체에 배부하여 심사 전 자체 개선토록 유도

  ① 등급심사 항목 중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총 심사배점 대비 10～20%이상]하여 안전보건의 중요성 부각 및 투자의욕 증진유도

  ※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공개제도 운영

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시설개선 투자시 모기업의 자금지원 및 금융 대출시 보증지원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50%는 정부에서 무상 보조하고 차액은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
- 모기업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시설 투자 시 차액 50%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대출시 보증 지원

(4)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단 구성 및 발대식 개최지원

- 대상
  ① 전기전자업종 모기업의 협력업체 우선 개최→점진적으로 타 업종으로 확대
  ② 단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능하면 100인 이상 기업을 모두 참여토록 유도

- 개최시기 : 년 초에 시작하여 년 말에 경과를 보고토록 하고 시기는 자율결정

- 방법
  ① 모기업의 최고 경영층과 협력업체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② 연도별 목표 재해율, 재해감소목표, 투자계획 및 협력업체 지원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포
  ③ 공동 안전보건활동 전개에 대한 구체화된 실천프로그램 마련
  ④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 및 불량업체 제재
  ⑤ 모기업, 협력업체 노·사 대표 산재예방 결의문 낭독
  ⑥ 기타 우수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 시상 등

나. 노·사 단체에서 조치하여야 할 내용

(1) 업주단체에 노사화합과 윤리경영 측면의 안전보건경영 전담 부서 또는 전담자 배치

- 경총과 같은 사업주단체에 윤리경영측면의 전담부서 설치, 업종별 사업주 단체는 안전보건경영 전담자를 배치

- 각 회원사에 대한 자율안전보건관리 이행촉구 및 안전보건경영 대

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 시 적극적인 안전보건분야의 의견 개진을 유도

(2) 재해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실시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노·사 단체는 회원사 등에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적극 권장
- 단위 기업별로 목표 재해율을 정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① 목표 재해율 달성 시 성과급 지급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
  ※ 목표 재해율 달성 시 절감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노동조합 기금으로 적립하고 차액은 안전보건시설투자비로 활용

다. 정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내용

(1) 노사화합측면의 안전보건경영 우수사업장 홍보 캠페인 전개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① 우수 사업장 선정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식화 (협력업체 명단공개)
- 국내·외 성공(모범)사례 집중보도(캠페인 홍보와 병행)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① 매년 1회 개최
  ②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방안, 성공사례 발굴 등
- 기타 국가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캠페인 실시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별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병행 실시
  ② 홍보물 배포 및 가두행진, 협력업체 작업장 방문 및 참여 당

부, 필요시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2) 모기업·협력업체 종합 안전보건관리 모델 개발·보급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표준모델을 제시
- 업종별, 협력 형태별로 확산모델 계속 연구

(3) 안전보건활동 지원 확대

- 기술지도 지원
  ① 모기업 또는 협력업체에서 지원요청 시 안전기술 지도 우선실시
  ② 작업환경 개선지원
  ③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개선지도
  ④ 유해·위험성 평가지도
- 교육지원
  ① 교육행사 지원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③ 위험관리모델 및 소집단활동 진행요령
  ④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기법
  ⑤ 위험예지훈련 및 사내 안전교육지원 등
- 시청각교육자료 대여 등 지원
  ① 분야별 비디오 Tape, 슬라이드, 정보시트, 교육CD 등
-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
  ① 안전·보건조치시 보조금 지원
  ②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지원

(4)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지도

- 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 규정에 의한 사

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법상 의무 이행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지원·지도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 협력업체 재해발생 시 모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토록 하여 위반 시 의법조치

(5) 홍보활동 강화

- 방송사, 기타 언론사 등 정기보도
  ① 성공(모범)사례 발표
  ②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구축에 따른 효과분석
  ③ 노사화합 우수사업장에 안전보건활동이 핵심요소임을 부각
- 재해예방단체 정기간행물 게재
  ① 업종별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종합 안전보건활동 모델제시
  ②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모범사례 확산

Ⅳ. 결론 및 정책 대안

1.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모델 설계

전기전자 업종의 협력업체들도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전문인력, 정보인프라 구축, 안전보건 투자 능력 등이 열악하여 모기업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보건관리의 효율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모기업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사내협력사, 사외협력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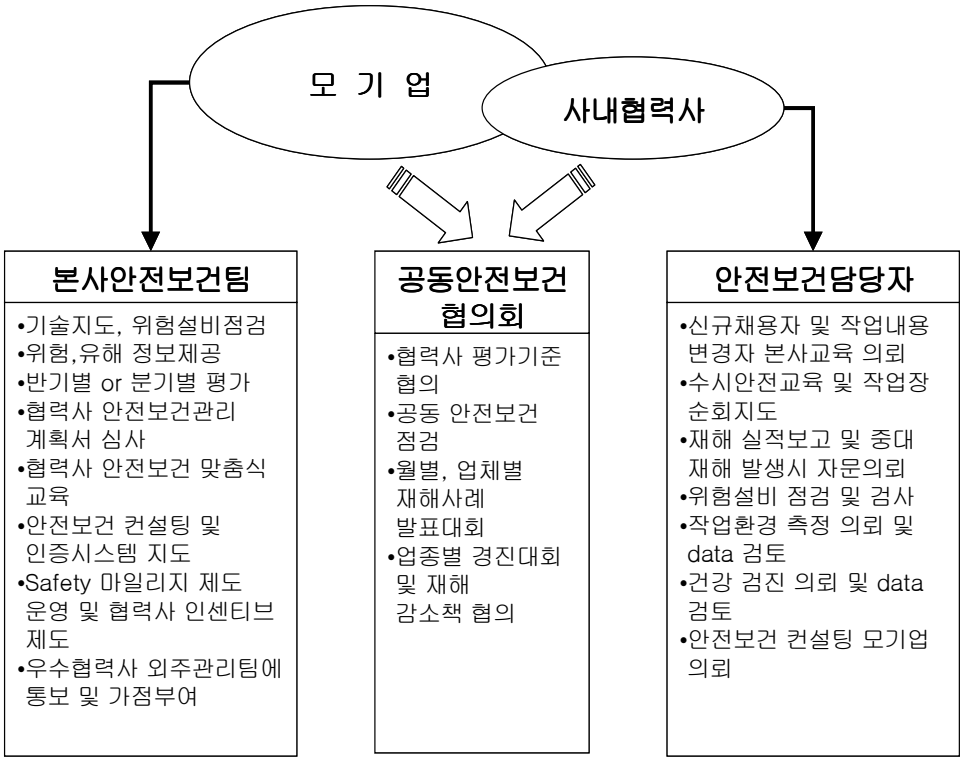

[그림 5]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분장

먼저 [그림 5] 는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모기업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를 나타내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모델

국내 모기업들은 공존공생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협의회 운영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정보 인프라 구축, 작업환경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 및 협력사 환산재해율 발표에 따른 우수기업 시상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여 영세한 사내협력사를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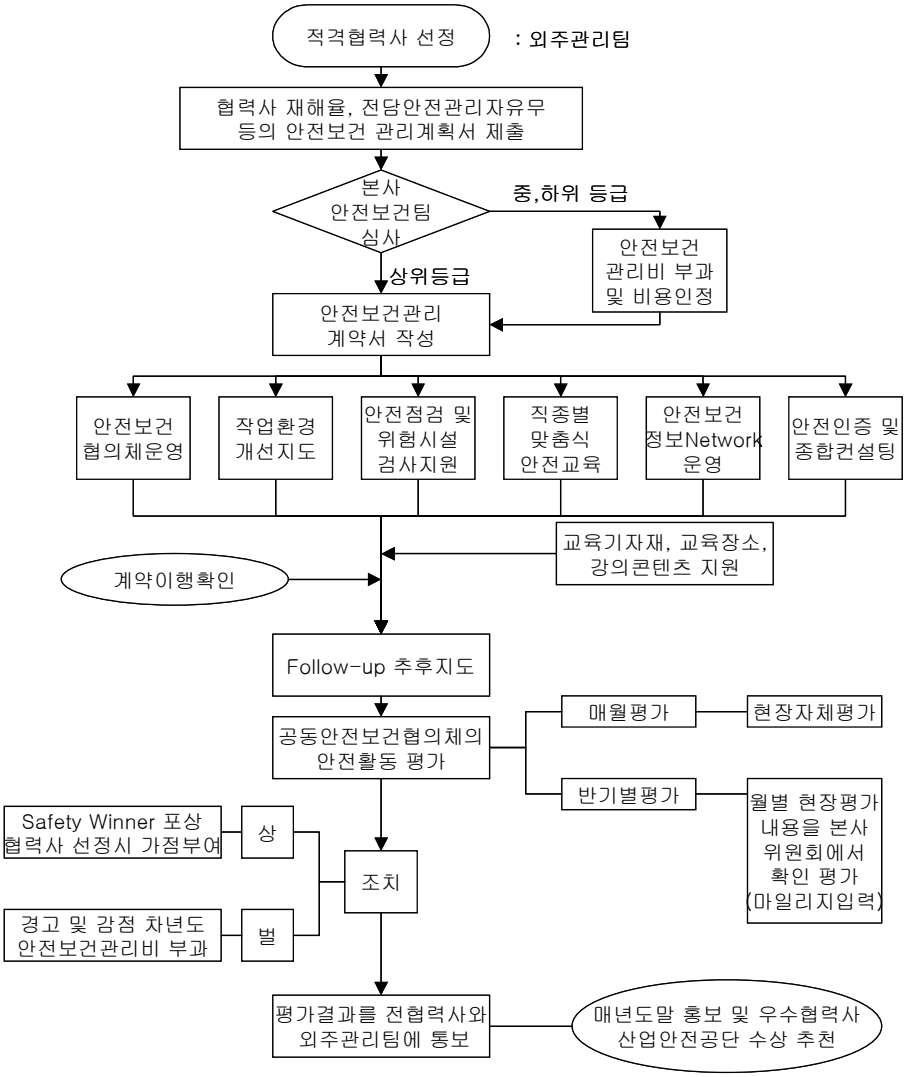

[그림 6]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6]에 모기업-사내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를 제시토록 하였다.

▷ 안전기술지원

- 안전진단팀 운영
- 장비검사 기술 지원

- 신규설비도입, 공정변경시 안전성평가
- 위험패트롤 팀 운영

▷ 보건기술지원
- 종합검진 지원(뇌심혈관계 진단, 근골격계 진단)
- 요통예방, 인간공학 프로그램 지원
- 작업환경평가
- 모기업 건강관리 시설의 협력사 지원 Program 반영

▷ 경영·교육훈련 지원
- 안전부문, 물류부문, 공무부문, 생산부분 교육지원
- 협력업체 경영자 회의 시 안전보건경영 교육지원
- 모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윤리경영측면의 안전보건경영 마인드 부여

▷ 협력업체 관리업무 표준화
- 내용 :
  1.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안전보건팀, 계약팀, 협력업체팀) 및 책임 명확화
  2. 지역별 협력업체 관리 및 평가
  3. 안전보건분야 평가기준 수립(Rating System 도입)
  4. 우수협력사 경영지원 및 시상(불량협력사 퇴출 및 명단공개제도)

▷ 정보인프라 및 Network 구축
- 협력사 안전보건 정보 Network 구축
- Cyber 상담 및 컨설팅 활성화
- 재해율과 재해통계의 Database화
- 작업안전 확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 제공 및 모의 훈련(Simulation)
- 위험설비와 위험작업에 대한 Data 수집 및 정보제공

(2) 사내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모델

사내협력사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 협력사의 재해감소 목표설정 및 재해율 보고
▷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주요내용 작성 및 보고
▷ 위험패트롤 팀 참여(모기업과 공동참여)
▷ 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활동 추진
▷ Unsafe 마일리지 제도 또는 Safety-Winner 포상제도 도입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매뉴얼 제작 및 근로자 교육

(3) 모기업-사내협력업체 공동 안전보건관리 모델

모기업과 사내협력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공동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의 주기적 실시
▷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시 공동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동의 위험패트롤 및 안전점검 실시(지적건수 別 감점제도 및 우수 작업장별 가점제도 도입)
▷ 지역별, 업종별 안전보건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 협력업체 불안전한 작업장 신고제도 실시

(4) 조직

모기업-사내협력업체 안전보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력확보와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이 시급하다.

▷ 모기업과 사내협력업체 공동의 안전보건관리 추진조직 구성

▷ 협력회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결성
▷ 지역별 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위한 협의체 결성

(5) 교육

협력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기업의 적극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교육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

▷ 사내협력사 사장단 회의 시 안전보건경영 마인드 형성교육(CEO교육 시 필수)
▷ 사내협력사 담당자의 월별 또는 분기별 전문교육 실시(모기업의 안전보건팀에서 교육실시)
▷ 사내협력사 근로자 교육자료 제공 및 시청각 자료 대여 (협력사에서 교육실시)
▷ Cyber 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공동개발(모기업-사내협력사-산업안전공단 공동추진)
▷ 산업안전공단 각 지도원과 지역본부 중심으로 협력사 요청시 맞춤식 교육실시(이동식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 활성화)

(6) 사내협력사 평가제도

협력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사 평가제도 수립이 절실하다.

▷ 사내 협력업체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공동의 간담회개최

▷ 공정한 평가에 따른 등급결정 (3~5 등급) : 최우수 등급 5등급(5 Start)
▷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운영
▷ 불량업체에 대한 벌칙제도 운영

(7) 인증제도 도입

국제적 기준(ISO)과 국내 S마크 등의 적극적 보급을 위한 사내협력사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2000 프로그램, BS8800 인증, OHSAS 18001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S마크, CE마크, UL 등의 각종 안전규격 획득 시 가점제도 도입

(8) 안전보건 관련 정보 인프라

사내협력사들이 지역별, 업종별로 구체적인 정보교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실행이 꼭 필요.

▷ 인트라넷, 웹사이트를 통한 안전정보 공유
▷ 모기업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주기적 정보전달(E-mail 등)
▷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계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 강의 Contents 및 교육훈련 정보의 공동개발(우수 협력사 시상제도)

(9) 정부의 제도 및 정책

현 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각종 제도 중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극 권장한다.

▷ 모기업 재해율 공개제도 운영
▷ 모기업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실적과 연계한 각종 인센티브제 운영
▷ 사내협력업체 우수사업장들에 대한 자금, 지도감독, 홍보 등의 지원책 강구
▷ 모기업의 사내협력사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
▷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작업환경이 불량하고 재해율이 높은 사내협력사를 선정하여 모기업이 중점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공사 구매나 입찰시 안전보건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 제정
▷ 무재해 및 재해율이 낮은 우수 사내협력사에 대한 납품우선권 부여
▷ 안전보건 경영대상에 협력사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참여유도

나.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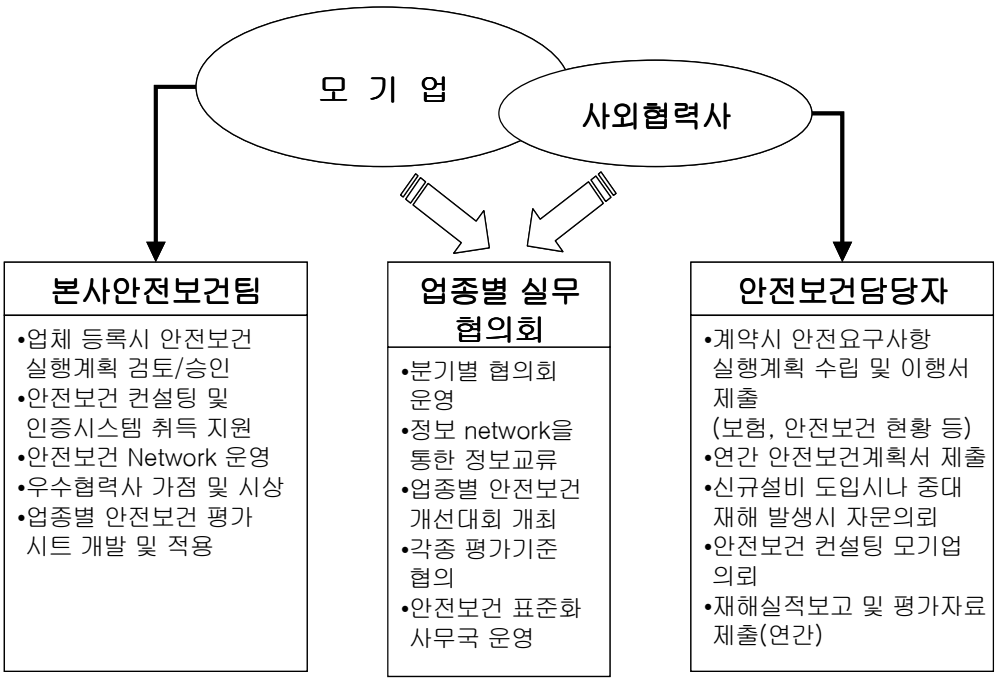

[그림 7]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분장

[그림 7]은 사외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모기업 안전보건관리 모델의 업무

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8]에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를 제시토록 하였다.

(1) 업종별 안전보건 실무협의체 운영

▷ 사외 협력회사 중 업종별(사출, 프레스, 금속가공, 전기, 전자 등)로 구분하여 임원급 대상으로 반기 1회 실무협의체 운영

▷ 협의체 운영기준

- 모기업에 납품비율 30% 이상으로 한함
- 기타 위원회 가입코자하는 기업은 평가후 구성유무 결정
- 신규업체는 등록시 반드시 안전보건, 환경 부분 현장 평가 실시

▷ 구성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 내용으로 회의내용 구성
- 모기업의 안전환경추진방향 전달
- 매년 말 협력회사 평가결과 설명
  (재해율 동종업종 대비 높을 경우, D,E등급은 협의체 탈퇴)
- 우수기업 시상 또는 발표회 진행

▷ 기타 KOSHA2000/OHSAS18001 및 ISO14001 인증취득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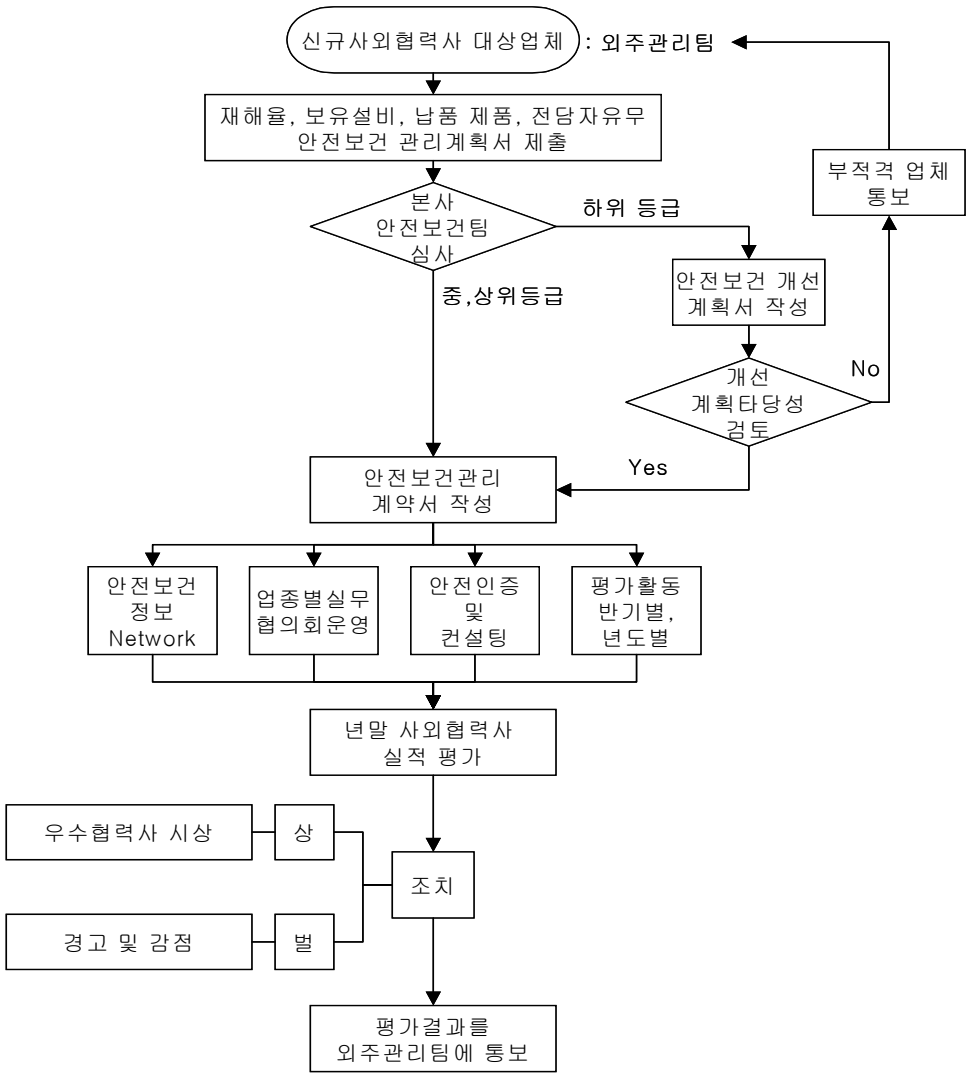

[그림 8] 모기업-사외협력사 안전보건 업무 Flow chart

(2) 안전보건 정보 Network 운영

▷ 모기업과 협력회사간의 위원회 Homepage를 개설하여 정보자료 공유 (품질, 환경, 안전 등 통합 Site 구축 → 모기업의 교육, 홍보, 기술자료 제공)

(3) 평가제도 운영

▷ 년간 평가(평가양식은 개발)
- A등급 : 우수회사(90점이상) → 시상대상, 대외홍보
- B등급 : 양호회사(75점이상) → 질적 향상 관리
- C등급 : 보통회사(60점이상) → 사업부 통보(경고)
- D,E등급 : 부진사(59점이하) → 자체 사후관리대상(경고)

※차년도 계약시 반영(단, 품질 등 기타 부분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

(4) 사외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 모델

사외협력사들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 신규계약시 산재보험가입 및 재해실적 자료 등의 안전보건 요구사항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서 작성
▷ 구체적인 년간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 제공된 업종별 평가시트를 통한 안전보건활동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업종별 실무협의회를 통한 정보전달 및 Network를 통한 정보교류
▷ KOSHA 2000, OHSAS18001 등의 안전보건 컨설팅 본사 의뢰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점검

(5) 교육

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극적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교육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외협력사 분기별 협의회 개최시 사장단(CEO교육) 회의에 안전보건

경영마인드 형성교육을 실행

▷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표준모형과 공동교재를 개발하여 현장밀착형 교육을 시도

▷ 공단의 시청각 자료와 이동식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

▷ 산업안전공단 가상안전체험교육과 같은 Cyber 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의식을 높임

(6) 안전보건 감사(Audit)

사외협력업체는 모기업과는 별도의 단위기업임으로 세부적인 안전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리스크관리 및 인증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회원사로 등록 또는 탈퇴토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외의 업체의 감사 항목과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규정화를 통해 사외협력사에 적용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7) 인증제도 도입

국제적 기준(ISO), 국내·국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S마크 획득 등의 각종 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 KOSHA2000 프로그램, BS8800, OHSAS18001, ISO14001 등의 인증시 심사 및 평가 우대책 반영

▷ S마크, CE마크, UL 등 각종 안전규격 획득시 가점제도 도입

(8) 정부의 제도 및 정책

사외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들은 다음과 같다.

▷ 모기업 환산재해율 공개제도 실행
▷ 모기업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 및 지도실적과 연계한 각종 인센티브제 운영
▷ 사외협력사중 재해율이 낮은 협력사 납품우선권 부여
▷ 안전보건경영대상에 협력사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참여유도
▷ 산업안전공단에 협력사 안전보건활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동식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체계구축

2. 결 론

전기전자 업종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성공 모델 모기업들의 사내, 사외의 많은 협력업체들을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완화의 여파가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의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침체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의욕과 전체 재해의 50%을 차지하는 2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제도개선, 국내 기업의 경영풍토 등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나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국내·국외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협력사 안전보건 활동을 분석하고 그들의 Need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협력사 안전보건 경영모델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모기업-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 모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히 현장 중심적 연구진행을 위하여 3차에 걸친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와 25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계층별 설문조사를 통해 모기업에서는 협력사들에게 종합안전보건컨설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협력사 대표들은 모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네트웍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협력사 담당자들은 안전보건교육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기업이 협력사 안전보건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는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50%가 강조하였고 안전보건스탭의 고용확대도 38.9%가 지적하고 있었다. 협력사 대표에 대한 설문에서도 안전보건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지원이 66.7%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협력사 대표들은 1순위 개선책으로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비 제도 신설을 50.91%나 강조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협력사 대표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의견도 중요한 factor이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업무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까다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준수를 36.8%가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담당자의 다른 업무 가중을 33.3%나 들고 있어 겸직수행과 까다로운 업무처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력사 담당자 설문에서는 모기업이 지원해 줄 경우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로 운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협력사 담당자들 또한 협력사 안전보건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47.4%가 강조하고 있었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 활성화를 24.6%나 지적하여 정부나 공단에서 협력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3개 계층 모두에서 원하고 있었다.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 개선이 요망되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설문에서는 위험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안전보건 교육을 그 다음 순위로 강조하였다. 또 실질적인 모기업-협력사 정보교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설문에서는 전체의 56.1%가 안전수칙 등의 근로자 작업안전 분야라고 응답하고 있어 안전공단이나 대행기관들이 작업안전분야의 교육과 교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 협력사 담당자들도 협력업체 대표설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선책 측면에

서 협력사 지원을 위한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을 52.6%나 원하고 있었다.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 형태는 대행기관에 자비위탁관리가 55.4%로 가장 높았고 전담자 확보에 의한 자체관리가 35.7%에 달해 성공기업의 협력사도 위탁관리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전기전자 업종의 협력사들은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었고, 100명~200명 사이의 인력을 보유한 기업비율도 2001년 29.5%에서 2002년 15.7%로 줄어 보다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협력사 대표들은 노동부와 공단에 요구하는 안전보건활성화 요인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기술지도와 무재해 달성 사업장의 각종 혜택 부여를 건의하고 있었다. 모기업 안전보건팀에 대한 설문에서는 협력사 교육서비스 및 정보교류에 있어 중요요소로 전체의 61.1%가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웍 구축을 지적하였고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보건활동 지원의 중요요소로서 산업위생기사의 고용을 35.3%가 강조하고 있었다. 협력사 안전보건 활동 지표로 중요한 것은 재해율 50%, 재해건수 27.8%, 안전보건 인증제도 22.2% 순으로 지적하였고 협력사가 보다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도입하고 싶은 제도로 Safety 마일리지 제도와 협력업체 상벌제도를 강조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력사를 사내, 사외로 구분하여 그 관리모델을 2가지로 구분·제시토록 하였다. 모기업의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모델에서는 공동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사내협력업체 평가 및 등급제,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 및 Safety 마일리지 제도, 협력업체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약서 작성 및 이행확인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관리모델을 제안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모형과 업무 flow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외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모델에서는 업종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정보네트웍을 통한 정보교류, 업종별 안전보건 평가시트 개발 및 적용, 협력업체 등록 시 안전보건 실행계획 검토(Audit)·승인, 안전보건 컨설팅 및 인증시스템 취득지원, 우수협력사 시상 및 감점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기업과 사내협력업체 공동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

화된 사내협력사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보다 모기업에 밀착된 안전보건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서 사내협력사의 안전보건수준이 모기업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기업의 사외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보네트웍을 이용한 관리체계 구축과 업종별 공동협의회 운영을 통해 모기업 안전보건활동이 전달될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케 하고 협력업체 등록 시 안전보건 실행계획을 검토(Audit)/승인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서 21세기 보다 효율적인 모기업-사외협력업체 안전보건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규정의 신설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 활성화 측면의 각종 정책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배려가 요망된다.

궁극적으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도 자율안전관리를 모토로 삼아야 함으로 절대규제나 강제적 방식이 아닌 성공적 모델 제시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자율적 확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효과분석과 제반 시행을 위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본 연구모형이 성공기업뿐만 아니라 타 기업에서도 널리 정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모델은 국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과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전기전자업종뿐만 아니라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건설업 등으로 확산되어야 협력업체들의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한 모델개발 연구가 제조업의 각 위험업종, 건설업 등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기타 분야로 그 성공모델을 계속 발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속적인 연구분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기업의 자율적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 확산을 위한 향후연구가 년도별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노동과 건강연구회,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실태 및 정책대안, 1998

안전문화 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중요성 (「협럭업체와 함께 합시다」 캠페인), 1995

부품거래 구조 - 모기업의 협력기업관계 전략이 협력기업의 기술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정종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의 특징 , Yonsei Business Review Vol. 37, No.2(Autumn 2000)

최재욱, 오인성, 염용태, 중소기업에서의 도급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관리 실태 및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5(2):262-273, 1993

조덕희, 한국에서의 도급확대와 도급거래의 계약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윤보,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 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상경연구 제23집 제1호 1998, 247-266

이승훈,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몇가지 문제

최홍열, 고상백, 장세진, 차봉석, 임형준, 이상윤, 김재용, 강동묵, 조수헌, 하청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평가, 대한산업의학회지, 2001;13(1):18-30

Health & Safety Executive, Guidence on Health and Safety for Contractors and Suppliers, HSE, 2002

New forms of contractural relationships and the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lth & Safety Executive, Use of contractors -a joint responsibility , HSE, 2002.9

Ronald Miller, Breaking down OSHA's Process Safety Management

Standard, SAFETY+HEALTH, Nov. 1999

J Crittall, Best practice in managing contractors;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of principles, J Occup Helath Safety, 13(4):353-360, 1997

http://www.hse.gov.uk/events/goodn1.htm, Good neighbour scheme

Breiland, Donald J. and Lola Fraser. "Excavation Safety and the Competent Person", *Professional Safety*, September 1991, pp.28～31

British Telecommunications, Safety Management Standard, 2001.

Ellis, Teri. "That First Day",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pril 1998, pp.26～29

Hislop, Richard D. "A Construction Safety Program", *Professional Safety*, September 1991, pp.14～20

Holt Robert G. "Preconstruction Surveys", *Professional Safety*, September 1991, pp.21～24

Nokia Corporation, Product Purchase Agreement, 2000.

Rietze, R. Benjamin, "Proactive Construction Management :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ub-contractor Safety", *Professional Safety*, January 1990, pp.14～16

Smith, S. L. "Under Construction : Safety at Multiemployer sites", *Occupational Hazards*, May 1998, pp.56～61

부 록

<부록 1> O전기(주) 협력업체 관리 요령서

<부록 2> 타 업종의 모기업-협력업체 성공사례

<부록 1>

O전기(주) 협력업체 관리 요령서

1. 목적

본 요령서는 O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가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정착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협력업체와 회사의 상호 이익증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한 방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적용대상 협력업체

본 요령서의 작용대상은 회사의 사내 전 협력업체와 사외협력업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업체로써 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회사 의존률이 50% 이상인 사외협력업체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 주관팀

“안전주관팀”이라 함은 회사의 기구, 조직 중 안전에 대한 기획, 통제, 관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팀/부를 말한다.

3.2 협력업체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자재, 원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 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장비, 근로 등을 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업체로써 사내, 사외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3.3 사내협력업체

“사내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와 용역계약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회사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4 사외협력업체

“사외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설계도면 또는 구매시방서에 의한 주문제작품이나 자체 설계에 의하여 생산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임가공업체를 포함한다.

3.5 임가공업체

“임가공업체”라 함은 회사가 업체에 회사 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업체가 이양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소재 또는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 또는 회사가 업체에 부품가공에 필요한 소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지급받은 소재 또는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3.6 계약팀

“계약핌”이라 함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부를 말한다.

3.7 협력업체관리 주관팀

“협력업체관리 주관팀”이라 함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평가, 지도육성을 담당하는 팀/부를 말한다.

4. 책임

4.1 안전주관팀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주관팀으로서 협력업체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1.3 안전 상담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4 안전관리 기술 및 기법 지원에 관한 사항
4.1.5 안전점검,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1.6 기타 협력업체 안전관리 점검,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4.2 협력업체관리 주관팀

협력업체관리 주관팀은 회사 협력업체관리의 주관팀으로서 본 요령서에 의한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창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계약팀

계약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1 사내협력업체의 선정시 상해, 질병 및 사고기록을 포함한 사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프로그램,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4.3.2 기타 사내협력업체 선정시 회사 안전관련 요구사항의 충족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4 계약의뢰팀

계약의뢰팀은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4.1 계약팀에서 선정한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해 도급공정과 관련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화재, 폭발, 독성물질의 누출 등의 잠재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4.2 도급작업 착수전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안전작업요령 등을 알려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 이를 사내협력업체사업주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4.4.3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비상탈출구의 확인, 응급조치, 구급장비사용법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행동 요령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4.4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1) 출입 및 근태 상황
2) 안전교육훈련 상황
3) 안전수칙 준수 사항
4) 작업자의 상해, 질별 및 사고 사항
5) 기타 안전작업과 관련된 사항

4.4.5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6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도급작업 착수전 4.5항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하며,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5 사내협력업체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5.1 당해 근로자들이 사업장내에서 안전요령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5.2 근로자들이 작업 및 작업공정과 관련하여 화재, 폭발, 독성물질의 누출 등 잠재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5.3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시기
3) 교육내용 및 강사
4)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

4.5.4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 중 새로이 발견한 위험성을 즉시 계약팀 및 안전주관팀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5 사내협력업체는 계약적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6 협력업체

4.6.1 사내,외 협력업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 등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당해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업재재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6.2 사내,외 협력업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예방시책과 회사의 안전관리 지도, 지원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 안전관리 내용

5.1 안전 협의회

안전주관팀은 사내,외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5.1.1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는 안전주관팀장의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의 대상은 사내,외 협력업체로 한다.

2) 구성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간사 : 안전주관팀장
(3) 위원 : 회사 협력업체 관리 담당자 1명 및 각 업체별 1명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중 1명)

(4) 회장의 선출 및 임무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3) 개최시기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의 개최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협의회의 개최 10일전에 대상 협력업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5.1.2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는 안전주관팀장의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의 대상은 사내협력업체로 한다.

2) 구성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의 구성 업체별 1명(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중 1명)씩 구성한다.

3) 개최시기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의 개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협의회 개최 5일전에 사내협력업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4) 5.1.1항에 의한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시 당해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는 생략할 수 있다.

5.1.3 협의회의 기능

안전 협의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

2) 협력업체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협의

3) 회원 상호간의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등

5.1.4 기타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2 안전교육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2.1 사외 협력업체

1)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년 1회이상 실시하며,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근로자 교육

(1) 교육주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안전주관팀은 5.2.2의 2항에 의거 안전교육 교안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송부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 감독자는 교육교안을 활용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2.2 사내 협력업체

1)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5.2.1의 1)항과 동일하다.

2) 근로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회사”근로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동일하다.

5.3 상담반 운영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에 대한 기술상담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 상담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5.3.1 구성

안전주관팀은 안전, 보건, 소방분야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5.3.2 운영방법

안전상담반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상담이 필요한 협력업체는 서신 또는 유선에 의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주관팀의 상담실무책임자는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2) 안전주관팀은 안전상담에 필요한 안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3.3 상담내용

1) 안전, 보건, 소방 및 산재 관련 사항

2)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 관련 사항

3) 기타 안전, 보건, 소방 관련 제반사항 등

5.3.4 상담처리 방법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상담을 접수하고 처리한 후에는 첨부 2(협력업체 안전 상담일지)에 의하여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4 안전보건 기술 및 기법의 지원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에 관한 기술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술 및 기법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5.4.1 지원항목

1) 협력업체가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 위험 물질에 관한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
3)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에 관한 사항
4) 무재해 관련 책자 및 홍보물에 지원
5) 기타 안전기술 및 기법 등에 관한 사항 등

5.4.2 지원시기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반을 통한 지원 요청시
2)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 후 피룡시
3) 기타 안전주관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5 안전점검, 진단 및 평가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 진단한다.

5.5.1 매월 4일 안전점검

1) 안전주관팀은 매월 4일을「협력업체 공동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협력업체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단, 4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의 근무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다.
2) 안전주관팀은 매월 4일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하여 년 1회이상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할 수 있다.
3)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여야 한다.

5.5.2 안전진단 및 평가

1) 사외협력업체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우수 협력업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전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는 회사표준 BI-301(협력업체 평가업무 요령서)에 따른다.

2) 사내협력업체

안전주관팀은 사내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

(1) 점검반의 구성

점검반의 구성음 다음과 같다.

안전주관팀의 안전관리자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와 당해 공정 근로자

(2) 점검횟수

점검횟수는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한다.

(3) 점검기준

점검기준은 회사 안전, 보건조치 기준에 준한다.

5.5.3 임시점검 및 진단실시

협력업체에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요청할 경우 안전주관팀에서 임시로 실실하는 안전점검 및 진단을 말하며, 안전주관팀은 임시점검 및 진단요청 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5.4 사내협력업체의 일일 안전점검

안전주관팀은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장에 대하여 일일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6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확인 및 승인

5.6.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확인

회사 계약팀은 협력업체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업체로부터 다음연도 익월까지의 상해, 질병 및 사고 기록을 포함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안전작업 수행능력, 재해감소 목표가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5.6.2 승인

회사 계약팀은 협력업체에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사항을 검토 및 보완 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안전관리계약서 사본을 안전주관팀에 송부하고 안전주관팀에 회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계약팀에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주관팀으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7 재해율 관리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의 재해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5.7.1 재해감소 목표승인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로부터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재해감소 목표 및 안전관리 년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조정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재해감소목표 및 안전관리 년간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다.

5.7.2 안전관리 실적 제출

1) 협력업체는 5.7.1항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첨부 3(년/분기 안전관리 실적)의 양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회사 안전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주관팀은 5.7.2의 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재해율 관리를 홍보하고 실적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안전주관팀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실적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록

No.	기록명	보관 및 관리부서	부서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보관장소	최소 보존기간
1	안전,진단 평가	협력업체관리 주관팀	2년	협력업체관리 주관팀장	협력업체관리 주관팀	5년
2	관련기록	관련팀/부 및 협력업체	3년	관련팀/부장	관련팀/부	3년

<부록 2>

타 업종의 모기업-협력업체 성공사례

2002년 7월에 열린 모기업-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를 중심으로 성공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업의 업종 구분 없이 공통적 성공사례분석을 시도하였고, 개별 기업이 얻은 성과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1. 현대자동차의 사례

○ 협력업체 안전관리 적극지원 배경

1) 협력업체 급증

IMF를 거치면서 안으로는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결과 가동율이 급상승하게 되어, 협력업체가 98년도 대비하여 2.7배 증가한 140개 업체에 종업원 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됨.

2)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새로운 업체가 설립되고 신입사원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자연히 증가하게 됨.
- 업체의 작업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간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발생 시 산재환자의 고통은 물론, 생산중단 및 화재로 인한 손실은 회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하지 않고는 무재해운동이 성공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영자와 전 직원이 인식함

3) 협력업체 재해 증가(최근 4년)

- 산업 재해율을 보면 199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협력업체 지원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면서 2000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
- 특이사항으로는 2001년도에 공장을 증축하면서 사망재해가 있었으나 추락방지 대책을 보완하여 시행한 후 사망사고요인이 제거됨
- 2003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산재 저감목표 초과 달성함

4) 협력업체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결과

-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업체 직원간에 간섭에 의한 사고 많음
- 몰라서 다치거나,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안되어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존재
-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와 상벌제도가 미흡하여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진시키지 못한 관리상의 문제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추진내용

1) 안전관리 협의회 운영

: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사업부별로 안전과가 별도로 존재하며, 사업부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스텝과 라인 조직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을 이원화시킴.

① 사업부장 주관 지역별 협의회 실시 : 월 1회(16개지역 140개 업체)
② 공장장 주관 총괄 협의회 실시 : 분기 1회(지역별 회장단 16명)
③ 임시협의회 겸 특별안전교육 실시(외부 교육업체 협조)
④ 협력업체간 정보교류 및 안전 Mind 공유
⑤ 안전보건관련 건의사항 수렴조치
⑥ 정기적인 작업장 순회점검(업체 운영부서에서 2일 1회)
⑦ 합동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1회, 사업부안전+업체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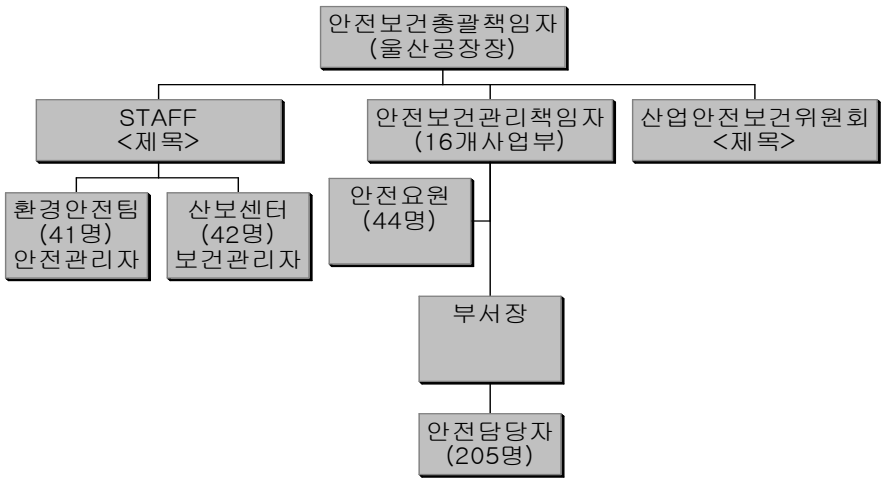

[그림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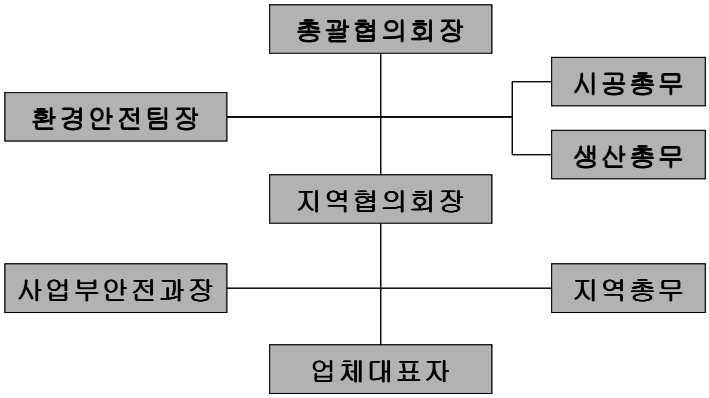

[그림 2] 안전관리 협의회 조직

2) 안전시설 보완 및 개선

① 시설공사업체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망 및 안전벨트, 고정용 로프설치

② 생산지원업체 : 자재 승, 하차용 테이블, 리프트 및 경레일 개선

- 테이블리프트 고무덮개 및 광센서 설치
- 양중기류 경레일 낙하방지용 이중안전장치 설치

③ 식당업체 : 22개 식당에 시설 및 위생관리 개선

- 주방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시공 및 배수구 설치
- 주,부식 용기 운반용 손수레 및 롤러컨베이어 설치
- 위생관리를 위한 색깔별 도마 및 식칼 보관대 설치

3)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① 교안 개발 지원 : 교안의 전산망 등재

② 안전보건 뉴스 공유 : 매일 전산망에 등록하여 열람 용이토록 함

③ 사내·외 전문강사 지원교육

④ 건강교재 제작 배포

⑤ VTR교재 편집제작 배포

⑥ 근육통 완화용 간이기구(압봉) 휴게실 비치

4) 홍보활동

① 협력업체 대표에게 안전소식지 발송 : 주1회
: 전산망(AutoWay)내 업체사장 우편함 이용

② 안전캠페인 실시

- 안전의 날(매월 첫째주 수요일)

• 소방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③ 사내방송 홍보 : 안전25시 코너 운영

④ 사내신문 홍보 : 안전, 건강코너 운영

⑤ 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배포 (2개월 1회)

⑥ 아이스크림 상품 이벤트로 안전의식 고취(안전은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메시지 전달)

⑦ 11대 안전보건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대회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관리 지원

① 사내 자체 측정팀에서 측정업무 무상대행 및 개선 추진

② 특수검진 및 일반검진비 지원

③ 건강관리 : 산업보건센터 이용

6) 솔선수범 및 자율안전관리 촉진

① 업체대표 직접교육 및 안전체조 참여

② 위험개선 활동 추진(위험한 시설이나 행동을 관찰하여 개선, 월2건 개선)

③ 자율안전관리 우수모델 육성 수평전개 추진

④ 위험신고, 고충접수용 긴급전화 운영

⑤ 협력업체 대표와 직통 E-mail 활용

7) 위험작업관리 및 상벌제도 운영

①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판 → 관련자 서명, 현장게시

② 안전관리 평가표 → 10대 수칙을 절대치로 평가

③ 위험작업 안전평가결과 공지, 상벌반영

8) 안전관리수준 정기평가 및 상벌제도 운영

① 평가 : 2월 1회

② 상벌반영

2. LG화학 사례

○ 협력업체 안전관리 적극지원 배경

1) 1976년 공장가동 이후 지속적인 공장 신·증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2) 공장가동 이후 협력업체 관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1994년~1997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락, 협착 등 원시적이고 예방 가능한 단순사고가 반복 발생

3) 안전사고 "0"화 전략과제 추진

①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협력업체 경영자의 안전 마인드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평가제도 및 Unsafe 마일리지 제도 등의 운영

② 안전기술 지원

: 협력업체 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팀 운영 및 장비 검사 기술지원

③ 보건기술 지원

: 협력업체 작업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측정실 지원과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뇌심혈관계 진단 및 근골격계 진단지원

④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각 부문별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지원 및 실습체험 위주인 건설안전 체험장 교육지원

4) 전략과제 추진효과

: 안전사고 "0"화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8년부터 안전사고는 4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내용

1)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① 안전보건 공동체 구성 운영

▷ 협력업체 안전보건 진단팀 운영

▷ 3대 기본수칙 지키기 운동실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보호구 착용 준수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작업전후 정리정돈 실시

②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대표자 협의회

- 구성인원 : LG화학 담당 임원, 공장장, 안전팀장, 공무팀장과 상주 협력업체 대표자

- 개최주기 : 1회/반기
- 주요협의 내용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신규안전보건시설 투자사항 및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협의

▷ 현장소장협의회
- 구성인원 : LG화학 안전팀, 생산팀 및 공무팀의 안전담당자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 개최주기 : 1회/월
- 주요협의 내용 :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지원, 작업환경 개선사항, 사고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하여 협의

③ 안전보건 평가제도 운영

▷ 운영내용
- 신규 및 기존 협력업체 평가를 1회/년 실시하며, 안전부문을 30% 평가에 반영(안전부문 : 30점, 기술력 부문 : 50점, 경영부분 : 20점)
- 안전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재해예방 활동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작업 입회여부	5점
	작업전·후 안전조치 실시여부	5점
	Unsafe 마일리지 누적결과	50점
	안전활동 계획수립 및 실시여부	5점
	보호구 검정품 지급기준 마련여부	5점
	근로자 건강 검진 실시여부	10점
건강/보건	유소견자 사후관리 여부	10점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10점
합 계		100점

※ 총 점수에 0.3을 곱하여 환산

-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우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입찰 우선권 및 공사한도액 무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등급	점 수	적 용 기 준
Ⅰ	80점 이상	입찰우선권, 공사한도액 무제한
Ⅱ	70～79점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
Ⅲ	65～69점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
Ⅳ	65점 이하	등록취소

④ Unsafe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운영내용

-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협력업체 작업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짐으로서 상습적인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음.
- 운영절차

불안전 사례 관찰	→	해당업체 개선지시서 송부	→	개선사항 안전팀에 보고	→	부여된 점수누적 관리	→	협력업체 평가반영

⑤ 불안전한 작업장 신고제도

▷ 모기업의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하여 협력업체 직원이 1차로 생산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여 이행되지 않을시 안전팀에 신고함

▷ 불안전한 현장

- 안전조치 및 작업준비 미흡
- 허가서 발급 전 작업강요
- 안전작업절차 이해 불가 및 무시
- 입회자 부재
- 기타 위험요인

▷ 신고 접수 후 불안전한 현장을 즉시 개선토록 생산 책임자에게 요청하고, 신고한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포상을 하며, 해당 협력업체에게는 Unsafe 마일리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⑥ 안전관리 우수업체 시범운영

▷ 상주하는 생산지원 협력업체 3개사와 정비/건설공사 협력업체 17개사를 대상으로 함

▷ 안전보건 진단팀의 1회/월 진단결과와 Unsafe 마일리지 누적 점수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협력업체 1개사와 우수 협력업체 4개사를 선

정함

▷ 최우수협력업체 1개사 100만원, 우수 협력업체 4개사 각 10만원의 포상을 하였으나, 동기부여가 미약하여 2001년부터는 입찰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⑦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원활동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정착을 위해 공사 발주 시 강화된 11대 기본수칙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는 공사비에 반영 지원함

▷ 추락, 낙하, 전도예방, 협착, 충돌예방, 화재, 폭발예방, 위험기계·기구 및 감전예방 등 4가지 잠재위험 특성별로 구분하여 지원 및 개선활동을 추진함.

2) 안전기술 지원

① 안전보건 진단팀 운영

▷ LG화학의 안전팀 4명, 공무팀 3명, 생산팀 3명으로 구성되며, 협력업체 설비의 안전진단, 부문별 개선활동을 추진함

▷ 협력업체 정비실의 CLEAN 3D 정착을 위하여, 현장 작업시 정리정돈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② 장비검사 기술지원

▷ 상주업체는 분기 1회, 비상주 회사는 작업 전에 장비 검사를 실시함

▷ 안전팀에서는 안전성검사, 공무팀에서는 장비의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시 사용허가 필증을 교부하며, 불합격 시에는 재검사토록 함

▷ 대상장비 및 검사항목

- 발전기/전기용접기 4개 업체 48대
  : 누전차단기 부착여부, 접지상태, 용접홀더 상태 및 엔진 기름 누출 여부 등
- 산소용접기/절단기 4개 업체 8대
  : 역화방지기 부착여부, 안정기 정상여부, 산소/아세틸렌 용기 찌그러짐 및 손상여부 등
- 전기드릴 및 그라인더 4개 업체 9대
  : 절연저항, 케이블 상태 및 안전덮개 손상여부 등

3) 보건기술 지원

① 보건관리 지원

▷ 건강관리실 지원

- 생산지원 협력업체 특수검진 지원
- 요통 예방체조 보급
- 산업보건의 상담 지원
- 협력업체 약품지원

▷ 11종의 체력측정 장비를 구비한 체력측정실 지원

▷ 체력측정 결과에 따른 5가지 운동처방 및 식생활 처방 제시

② 뇌·심혈관계 질환 진단지원

▷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 전 보건교육을 실시

▷ 혈압을 측정하여 160/100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15분 대기 후 2회 측정

▷ 2회 측정 후 변함이 없으면 질환자로 판정함

▷ 해당 질환자에 대해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치료를 유도함

▷ 해당 질환자는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외의 작업으로 전환토록 조치함

③ 근골격계 진단지원

▷ 포장실 및 출하공정 진단실시(한국산업안전공단 보건팀)

▷ 3개 공정 진단을 통해 9건 개선 :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발 받침대, 자동화, 작업대 배치, 작업환경 개선 등

4) 교육·훈련 지원

① 교육·훈련지원

▷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부문 교육

- 정기 협력업체 교육
- 협력업체 소장단 교육
- 가동중지 전 특별안전 교육
- 정문출입자 안전교육
- 중대산업사고대비훈련

▷ 제품포장에서 출하·운송과정의 발생가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류부문 교육

-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 운송제품 특성에 대한 교육
- 운송차량 사고대비 훈련

▷ 작업 및 공사 중 발생 가능한 기계·설비의 공무부문 교육
- 취급기계 안전에 대한 교육
- 취급설비 특성에 대한 교육

▷ 작업이 진행되는 생산공정 및 공정의 사용물질에 대한 생산부문 교육 등 작업특성에 따라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 실시
- 작업전 공정 위험에 대한 교육
- 취급물질에 대한 교육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모기업-협력업체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연구

(일반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3-38-353)

발 행 일 : 2003년 7월 초판발행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 광 종

연구책임자 :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이경용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전 화 : (032) 5100-909
F A X : (032) 5180-867

<비매품>